

第26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07年3月6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 이자제한법안(대안)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物價安定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6. 土地課稅基準調査法 폐지법률안
17. 滯納租稅의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18. 臨時土地收得稅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19. 新聞用紙에對한關稅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20. 韓國米穀倉庫株式會社와韓國運輸株式會社의合併에附隨되는諸稅免除에 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1. 歸屬法人의株主總會召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22.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3. 歲入補填國債法 폐지법률안
24.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2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29.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스포츠산업 진흥법안
32.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33.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5.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36. 鄕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
37.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
38.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39.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40.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4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42.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
43.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44.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45.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
46.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47.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
48.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49.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
50.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
5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53.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
5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55.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5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60. 障礙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1.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2.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3.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4.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67.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68.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69.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70.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7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72.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
73.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80.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8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3.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84.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附議된案件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
o 의사진행의 건 7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3.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4.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 · 주성영 · 주호영 · 김재경 · 천정배 · 양승조 · 우윤근 · 장윤석 · 정성호 · 선병렬 · 최용규 의원 발의) 9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박세환 · 나경원 · 최병국 · 임종인 · 선병렬 · 김동철 · 이상경 · 주성영 · 조순형 · 이종걸 · 이상민 · 안상수 · 안홍준 의원 발의) 9
6.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7. 이자제한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2.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 · 장향숙 · 정화원 · 박재완 · 김태홍 · 한광원 · 안영근 · 서갑원 · 심재덕 · 우제창 · 이경숙 · 김재홍 · 이종걸 · 노현송 · 강창일 · 이상민 · 김동철 · 신상진 · 김영춘 · 정청래 · 안병엽 의원 발의) 12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권경석 · 김명주 · 김성조 · 김재원 · 김정훈 · 박재완 · 엄호성 · 이낙연 · 이인기 · 이재용 · 전여옥 의원 발의) 13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 · 주성영 · 엄호성 · 김태환 · 광성문 · 이인기 · 고조홍 · 김성조 · 공성진 · 김광원 의원 발의) 13
15. 物價安定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 · 박상돈 · 윤호중 · 김재운 · 김낙순 · 김현미 · 안병엽 · 김춘진 · 제종길 · 서갑원 · 심재덕 · 문병호 · 서병수 · 정의화 의원 발의) 13
16. 土地課稅基準調査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광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

	의회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17.	滯納租稅의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곽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18.	臨時土地收得稅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곽성 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19.	新聞用紙에對한關稅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곽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20.	韓國米穀倉庫株式會社와韓國運輸株式會社의合併에附隨되는諸稅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 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곽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 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21.	歸屬法人의株主總會召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이성권 · 정 갑윤 · 최병국 · 김재윤 · 곽성문 · 이해봉 · 이인기 · 신상진 · 안상수 · 문희 의원 발의)	13
22.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곽성문 · 이인 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23.	歲入補填國債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곽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 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13
24.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6
2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 · 강길부 · 고조흥 · 고흥길 · 김명 자 · 김문수 · 김부겸 · 김성곤 · 김재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효석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준 · 박명광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혜석 · 신기남 · 신중식 · 안명옥 · 안영근 · 염동 연 · 원희룡 · 유선호 · 유인태 · 이근식 · 이상경 · 이성권 · 이시종 · 이혜훈 · 임종석 · 장경수 · 전병헌 · 전여옥 · 정문헌 · 정성호 · 정의화 · 조경태 · 조일현 · 주승용 · 최경환 · 최재성 · 홍창 선 의원 발의)	16
2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關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 웅 · 김태홍 · 강창일 · 신중식 · 이근식 · 장복심 · 이상민 · 정장선 · 이원영 · 김태년 · 노현송 · 원혜영 · 이종걸 · 이영순 · 김재홍 · 유선호 · 임종인 · 정성호 · 양형일 · 강혜숙 · 엄호성 · 정봉 주 · 김성곤 · 선병렬 의원 발의)	17
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28.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최병국 · 정갑윤 · 윤두환 · 김기현 · 정몽준 · 권철현 · 유기홍 · 김영춘 · 이경숙 · 민병두 · 김영숙 · 김교 흥 · 최재성 · 이은영 · 정봉주 · 정문헌 · 이근현 · 안민석 · 이시종 · 박기준 · 홍창선 · 박상돈 · 김양수 · 한광원 · 조경태 · 문석호 · 신학용 · 유인태 · 우상호 · 박명광 · 오제세 · 변재일 · 노영 민 · 유필우 · 김혁규 · 홍재형 · 이미경 · 김근태 · 양승조 · 정종복 의원 발의)	18
29.	유네스코活動에關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o	의사진행의 건	22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5
31.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강기정 · 강성중 · 김덕규 · 김원웅 · 김재 윤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웅래 · 민병두 · 배기선 · 신기남 · 오영식 · 우상호 · 우윤근 · 윤원호 · 이광철 · 이미경 · 이시종 · 이인기 · 정청래 의원 발의)	25
32.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33.	경륜 · 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34.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35.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36. 郷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37.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38.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39.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40.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4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2.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3.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4.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5.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6.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7.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8.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9.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50.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5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5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3.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5.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60. 障礙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61.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62.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63.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64.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김진표 · 김선미 · 김춘진 · 구노희 · 우제창 · 문학진 · 김낙순 · 장향숙 · 최재성 · 김덕규 · 백원우 의원 발의)	31
66.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67.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68.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69.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70.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7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72.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73.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5
74.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5
75.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5
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5
7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김동철 · 김태홍 · 서재관 · 신학용 · 양승조 · 유필우 · 이계안 · 이시중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	35

7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35

79.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80.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7

8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7

8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7

83.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37

84.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7

8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37

○ 의사진행의 건 41

(14시32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와 계시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30분씩 이렇게 늦으시면 국회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무슨 행사가 있더라도 개의 시간은 맞춰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운영이, 국민들한테 비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4시3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병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의용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인 부담금에 해당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는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역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동법 별표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진행의 건

(14시38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열린우리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하고 기막힌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점 국회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참으로 중요한 부동산대책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생국회를 약속하고 시작한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어제까지 세 차례 예정됐던 본회의를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는 물론이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88건의 상정 가능 안건 중 한나라당의 요구를 반영해 상정키로 했던 71건의 안건조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제 원내대표회담 직전까지 소속 의원들의 법사위 활동 불참 지시를 내려서 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1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은 또다시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생을 불모로 삼고 다수의 의회적인 폭거로 국회를 유린하는 한나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민생국회를 외쳤던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대선에만 마음이 가 있어 민생입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예요」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안이 어떤 법안입니까? 길게는 수년간 논의해 온 법안에서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는 주택법은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건교위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서 6주 연속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서민, 국민, 대중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어렵게 잡힌 주택시장 안정세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어떤 법들입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고, 치매와 중풍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돌보자는 그런 법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하지 마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서 이런 민생법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립학교법과 부동산 대책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제시한 사학법 절충안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국회를 파행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야말로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사학법을 빌미로 민생법안을 흥정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주택법 처리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주택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요동치고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주택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모두가 결연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고질적인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처리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일, 어르신들의 노후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 이 모두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의 과제들입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차대한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이 말하기를 한나라당이 무얼 잘못해서 국회가 파행되었다고 하는데 국회가 파행이 되었습니까? 국회가 어디에 무슨 국회가 파행이 되었습니까?

어제 본회의는 우리 원내대표단이 의장님을 정중하게 찾아뵙고 ‘지금 여야 간에 협의된 사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좀 본회의를 열어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볼 테니 당신이 좀더 협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제 본회의가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파행입니까? 정신 좀 똑똑히 차리고 말을 똑바로 하세요.

김종률 의원님! 말을 용어를 똑바로 쓰셔야지.

지금 김종률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의장님께 직권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열린당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또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장께서 이렇게 하는 예비제도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고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분양가상한제 또 원가공개제, 이런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

지 않는 것이고, OECD에서 오늘 낸 보고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여야 합의정신, 참 열린우리당도 우리 교섭단체 간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충분히 양보를 해서 이것이 지금 잘 합의 처리가 되어서 법사위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 가면 5일 동안 경과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법을 이것을 무엇 때문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열린우리당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이기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기자실에 가 가지고 ‘주택법, 연금법 등은 직권상정을 요청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즉 국민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저께까지 이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학법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이 합의하기를 ‘이번 2월 국회에 민생법안과 더불어 사학법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주택법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양보할 만큼 다 양보를 했고, 또 연금법도 양보를 하고, 또 이 로스쿨도 양보를 하고,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내 교섭단체, 지금 운영위원장도 제1당이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린당이 그 동안 여당 했던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운영위원장까지 해 주겠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학법 문제도 함께 처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타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원내부대표가 국민 앞에 나가 가지고 이 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택법과 또 연금법과 그리고 출자총액제, 양보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이것을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되고, 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4일까지 다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당대회 하고 나서 날짜가 며칠 있었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처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임시국회를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3월 초에 우리가 한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합시다. 이것이 오늘 원내대표 간의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해외일정 등을 비롯해 18일 이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의장직권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이것은 의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학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의 당론은 종교 사학은 종단에, 그리고 일반 사학은 동창회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회에다가 이사추천권을 주자.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이 개방사학제이니까 그것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워낙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당의 여러 당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께서 양보를 해서 종단에만 그러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원리이고, 또 타협이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타협도 하기 싫다. 표결도 안 된다……

열린우리당이 제2당 아닙니까, 원내. 원내 제2당이 타협도 하지 않고, 표결도 안 된다…… 이 국회가 열린우리당 혼자 국회입니까?

(장내 소란)

제발 그런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정말 타협하고,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과격파들이 비록 이것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더라도 제발 의장님의 그 경륜과 또 국회의 아주 원활한 모습을 위해서 순리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최재천·주성영·주호영·김재경·천정배·양승조·우윤근·장윤석·정성호·선병렬·최용규 의원 발의)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세환·나경원·최병국·임종인·선병렬·김동철·이상경·주성영·조순형·이종걸·이상민·안상수·안홍준 의원 발의)

6.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이자제한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5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의사일정 제5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자제한법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이자제한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및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에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

였습니다.

둘째,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청탁·알선과 관련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의 범위에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만으로는 위 규정의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법률구조사건에 대하여는 지시·명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법률가 단체인 한국법학원을 지원·육성하여 국내 법무역량의 집결과 연구활동, 대외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로 하여금 한국법학원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고,

둘째,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 징수의 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설학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창원지방법원의 인구수 및 사건 수 등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시설접근성을 높여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의 적정한 분산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마산시·함안군 및 의령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법원청사신축 예산확보 및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이를 2011년 3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공탁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인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

넷째,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출연금 및 그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등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자제한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리대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

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계약으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정한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였고,

넷째, 간주이자 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에도 적용하되 제도권 금융과 등록대부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0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4인, 기권 16인으로서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으로서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자제한법(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2인, 기권 10인으로서 이자제한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0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계경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계경 정무위원회 소속 이계경 의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채용시험 가산점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만점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6인, 기권 6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

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

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권경석·김명주·김성조·김재원·김정훈·박재완·엄호성·이낙연·이인기·이재용·전여옥 의원 발의)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주성영·엄호성·김태환·곽성문·이인기·고조홍·김성조·공성진·김광원 의원 발의)
- 15. 物價安定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박상돈·윤호중·김재윤·김낙순·김현미·안병엽·김춘진·제종길·서갑원·심재덕·문병호·서병수·정의화 의원 발의)
- 16. 土地課稅基準調査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 17. 滯納租稅의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 18. 臨時土地收得稅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 19. 新聞用紙에對한關稅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 20. 韓國米穀倉庫株式會社와韓國運輸株式會社の合併에附隨되는諸稅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 21. 歸屬法人의株主總會召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정갑윤·최병국·김재윤·곽성문·이해봉·이인기·신상진·안상수·문희 의원 발의)

22.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23. 歲入補填國債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15시1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2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오제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청주 흥덕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공고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

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업무이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규모회사에 대하여 완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금융기관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통보하는 것을 재량화할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 도모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신용공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약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할부 금융 내용과 관련한 분쟁 및 피해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되 서면고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지방식을 함께 도입하였고,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다른 명칭의 부대비용이 전부 고지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최고가격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던 부당이득세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공공요금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신설하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개념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 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 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와 한국농수주식회사의 합병에 부수되는 세면제에 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귀속법인의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및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8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당 법률들은 이미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고 관계사무도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물
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토
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
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체
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
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임
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
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1인, 기권 5인으로서 신
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
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
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한
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
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
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귀
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
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귀
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강길부·고조흥·고홍길·김명자·김문수·김부겸·김성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효석·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혜석·신기남·신중식·안명옥·안영근·염동연·원희룡·유선호·유인태·이근식·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혜훈·임종석·장경수·전병헌·전여옥·정문헌·정성호·정의화·조정태·조일현·주승용·최경환·최재성·홍창선 의원 발의)

(15시3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4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의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정의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성권 의원, 정병국 의원, 본 의원 및 정부에서 각각 제안한 4건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4건의 법

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범지구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 징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출국자에 대하여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 징수하되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의 해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하에 피해국에 구호대의 파견 및 구호물품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활동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구호물품의 지원, 현금 지원, 보건·의료활동 등 해외긴급구호의 종류를 명시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 등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간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및 해외긴급구호본부 등 해외긴급구호의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국방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김원웅·김태홍·강창일·신중식·이근식·장복심·이상민·정장선·이원영·김태년·노현송·원혜영·이종걸·이영순·김재홍·유선호·임종인·정성호·양형일·강혜숙·엄호성·정봉주·김성곤·선병렬 의원 발의)

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1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6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갑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점하 강

제동원 피해 신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현행 2년의 진상조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피해 신고 또는 진상조사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 개편하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진상조사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3세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며 특별 채용된 특수직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 금지 기간인 5년 내에도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별 채용된 특수직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를 허용하려는 것이나 정원 조정, 직제 개편 등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유의 대강을 표시하여 포괄 위임을 방지하고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정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최병국·정갑윤·윤두환·김기현·정몽준·권철현·유기홍·김영춘·이경숙·민병두·김영숙·김교홍·최재성·이은영·정봉주·정문헌·이군현·안민석·이시중·박기춘·홍창선·박상돈·김양수·한광원·조경태·문석호·신학용·유인태·우상호·박명광·오제세·변재일·노영민·유필우·김혁규·홍재형·이미경·김근태·양승조·정종복 의원 발의)

29. 유네스코활동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8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 29항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을 울산광역시에 설립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법률의 제명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고, 학교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울산시민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울산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울산국립대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사실상 사립대학을 울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울산시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요구는 제대로 된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될 대학은 울산시민들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립대학 전체를 법인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주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설치될 대학은 사실상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초기 설립만 국가와 울산시 재정으로 할 뿐입니다. 이후 대학 운영과 학교 발전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국립대학이 어떻게 국립대학일 수 있습니까?

울산국립대학은 결국 자체적인 수익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으며 울산에 필요한 교육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학문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비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사립대학에 준하는 등록금의 수준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폭등 사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거대 야당들이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법인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교직원도 사립대학교법을 적용하면서 징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수준을 요구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이 사회를 통한 통제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민주성과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진행될 국립대 법인화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자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대학이 이런 대학이겠습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본 법안의 처리가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07년도 2월 12일 발의되었고 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교육위에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2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3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일 경우에 20일

이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58조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심의는 빠져 있고 국회의원들은 고무도장 찍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본 법안은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참여한 갈등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국회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국회의원 스스로 법안심의를 내던지고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지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본 법안에 대한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2009년도 개교를 위해서 3월 말까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립대학의 설치 근거인 국립대학교설치령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국립대 법인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거짓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거짓 놀음에 국회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립대의 공공성은 철저히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거짓 선전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울산국립대학 설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울산시민, 교육사회단체는 누가 거수기인지 누가 제대로 된 울산국립대학을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최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의원** 건설교통위 소속 강길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립대학법인 울

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께서 울산국립대의 설립은 찬성하지만 국립대 법인화에는 반대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요지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국립대의 부실화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또한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의 충심과는 달리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울산국립대 설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의 경우 시행령 및 정관 마련, 학교부지 보상 관련 공익사업의 인정, 법인 설립과 교직원 및 학생 모집 등 개교 준비를 위해서는 대학 설립의 근거 법률이 필요하며 부득이 이 법률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영 의원께서는 울산국립대학교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서 설립하자고 주장합니다. 법인이 아닌 현행 국립대학 형식으로 울산국립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국립대학교 신설은 이미 2005년 9월 2일 정부방침으로 설립이 결정되었고 법인의 형식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 간 양해각서 체결 시에도 동 사항이 명문화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건설비 2500억 원을 BTL 예산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약속대로 2009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8월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정부와의 MOU 체결에 따라서 울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서 현재 90% 정도의 학교부지를 매수했으나 잔여 부지의 수용 마무리와 매수한 부지의 대학법인에 대한 양여, 다음에 대학발전기금의 대학법인에 대한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근거 법령이 필요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현행 국립대 형식으로 설립하자는 것은 사실상 울산지역의 국립대학 신설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울산시민과 기업인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울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고 종합대학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상호 보완과 협력, 경쟁체제가 절실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국립대가 사실상 사립대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 제15조1항에 보면 “국

가는 국립대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 건전화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이사를 추천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국가의 출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또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대학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법인화를 통해서 일본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예산, 조직 및 인사 측면에서 대학경영의 자율성과 높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시스템을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의 법인화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들의 신분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지만 신설대학인 울산국립대는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존 국립대 교직원들의 신분 문제나 연금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대학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조국 근대화의 상징도시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내 최초·최대의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고 대기업 공장이 많이 있으나 교육과 문화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단지원시설이 미비해서 공장 간부나 고급기술인력이 지방에 정착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심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립대 부실화를 막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교육부에서 부산의 부경대와 해양대를 접속해서 분산 이전을 통해 울산국립대를 설립하려 했으나 번번이 학교 구성원, 동창회, 지자체의 반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

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서는 찬성 투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 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억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님께서 정말 울산이 그동안에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이 소외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립대학을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국립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우려의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국립대학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은 물론 지금 현 노무현 대통령 또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길 선배님도 울산에 오셔서 공히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립대를 설립하겠다’, 약속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울산에 국립대학이 절실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울산의 한 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약 1만 4000명, 그중에 약 70%가 외지로 고등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와 더불어 자금의 유출이 연간 약 5000억이 외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통계 수치로 볼 때 울산광역시가 국민소득 약 3만 6000불 합시다라는 삶의 질 수준으로 따진다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강길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를 마시면서 국세 납부, 국세 부담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인구로 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이 내는 국세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담세율은 전국 어디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울산이 가장 담세율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혜택은 ‘국립’이라는 용어를 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울산 110만 시민이 울산국립대를 주장할 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립대를 없애야 할 판에 신설은 무슨 신설이나……’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정말 울산시민은 같구합니다. 정말 뿌리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울산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그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니까? 교육·문화·예술 이러한 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니까 지방을 안 가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울산광역시 110만 시민은 부산 지역의 부경대학, 해양대학, 심지어 안동의 안동대학까지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 온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 가서는 분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참다가 ‘분교 할 바에야 안 하겠다’ 이래서 결국 오늘에 이른 것이 국립대학인 울산기술과학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님께서 ‘제대로 된 국립대학 만들어라’,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돼 주기를 우리 110만 시민은 정말로 같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교육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설립되는 국립대학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초기투자가 5000억인데 5000억 중에 25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50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최순영 의원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울산국립대학이 정말 11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해소하고 또 우리 국가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울산 시민은 이렇게라도 돼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에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 울산시민의 바람을 해소해 주겠다고…… 사실 절차상의 하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울산에 단 1개 있는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 1회 생입니다. 울산대학교 동창회장을 제가 이십몇 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회장을 넘겨 주었는데 그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동문회에서 저 보고 욕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심정 헤아리시고 110만 울산시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교육위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 대로 찬성에 표를 던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정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진행의 건

(16시13분)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 의원 국회에 세 번째 교섭단체로 등록된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님께서는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에게는 이제껏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이 이럴진대 그동안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셨던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압박과 설움에 시달리셨는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을 심의, 처리하기에 앞서서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님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대표님에게 국민 앞에 엄중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민생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생을 우리 모두가 외쳤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모든 정파가 이제까지 한결같이 큰 목소리로 민생을 외쳐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솔직히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처리키로 서로 속고 속이는 협상을 했다는 것은 양당 간에 합의된 합의문안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도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지 이 점도 역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대표님께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이것은 추후에 속기록에서 이 표현은 삭

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기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다가 하면 장영달 대표님께서서는 한나라당에 조폭집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1당과 제2당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 품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비속한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통합신당모임은 국회에 국회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섭단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동안에 국회 운영과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마땅히 대표 간 협의 테이블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추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께서 나오셔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국회의장님께 주택법 개정안,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시급성 그리고 중차대성을 감안해서 직권으로 상정해서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양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봄이 온 듯하더니 겨울보다 더 추운 꽃샘추위가 물려왔습니다. 갑작스런 강풍과 강추위로 전국이 퐁퐁 얼어붙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어민과 기업인 그리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관련 정부부처나 해당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강풍은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도 불어 다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투기 비호, 민생 외면, 한나라당 발 돌풍에 쓸려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의 부동산 대책과 1월 31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투기와 독과점의 폐해로 왜곡되어 있던 주택시장에 봄바람 같은 훈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월 11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률이 급속히 둔화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률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강남의 집값도 17개월 만에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징후가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약 81%가 넘는 국민들께서 1월 11일 부동산대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진행됐던 2월 임시국회가 한참 진행 중이던 2월 16일 KBS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엄중하게 묻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며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택법 개정안의 저지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국민의 실망과 부동산시장의 동요가 한나라당이 국회 제1당으로 복귀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까?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정치와도, 정권과도 무관한,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입니다. 정치도 좋고 정권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그저 정략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소아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바꾸어 즉시 주택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본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 건교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내용에 합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체계와 자구수정만 하면 끝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를 잠깐 정회해서라도 법사위를 개최해서 본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3월 중에 임시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법안들입니다. 오늘 국회가 끝나려면 아직 8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래도 미진한 것은 3월에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오늘 처리가 여의치 않다면 의장님께서도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직권상정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가장 우선해야 될 우리들의 책무이며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많은 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와 봉사를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화사한 봄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은 봄맞이와 이사, 신학기 준비 등으로 분주해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 따뜻하고 화사한 봄 햇살을 선물해 드릴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민생법안을 처리를 하기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교위원회에서는 이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시장적이다’ ‘헌법과 어긋난다’라는 지적들이 술하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부에서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비쳐 왔습니다.

‘주택법도 처리를 안 해 주는 니네들, 사학법도 처리를 안 해 주겠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은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지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원내대표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응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숙성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채 닳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이 자리에 올라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 ‘그것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렇게 빨리 열 필요가 없다……

(「정회하고 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님의 일정을 이유로 해서 늦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택법, 이 부분 하나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에 만병통치약일 것처럼 언론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정 4년 동안에 부동산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무려 80% 올랐습니다. 정책의 난조로 인해서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행정도시다 혁신도시다 지역도시다 신도시다 해서 참여정부 4년 동안에 풀린 땅값만 60조 원입니다. 정책 잘못되고 돈은 엄청나게 풀리고 그래서 부동산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원내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묵살하고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라고 의장을 강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의회의 바른, 정당한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웁소」 하는 의원 있음)

3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미뤄져 있는 민생법안들 처리하자는데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하면 되지 왜 하지 말라 그래」 하는 의원 있음)

(「빈둥빈둥 놀지 말아라……」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께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빌미로 한나라당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조폭집단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야말로 조폭에 다름 아닌 말씀이십니다. 원내대표께서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점잖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이 원내대표의 마땅한 품위일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빌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법안 중에 사학법을, 사학법이야말로 민생법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민생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자는 것이 바로 사학법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택법을 올리지 않았던 것은 올바른 의회 질서를 존중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3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6시30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재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심재엽 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서혜석 의원·신학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통신기기의 제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승인을 얻지 않고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와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의 위임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며,

셋째,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심재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기정·강성종·김덕규·김원웅·김재윤·김태홍·김한길·김희선·노웅래·민병두·배기선·신기남·오영식·우상호·우윤근·윤원호·이광철·이미경·이시중·이인기·정청래 의원 발의)

32.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1항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정청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마포을 출신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 진흥과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업종별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한글화는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정청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8
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문화예술진
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6. 郷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향교
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전통사
찰보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
항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
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최구식 의원님 나오셔서 5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최구식 존경하는 국회의
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입니다.

향교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법 전
부개정법률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
률안,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5건의 개정안 역시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
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구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그러면 먼저 향교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향
교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사찰보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전
통사찰보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박
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해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어장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영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개정안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시키기 위해 법제처와 국회사무처가 주관되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이들 개정안은 법률 내용상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체계·자구 정비 차원에서 법적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에 전년 정기국회에서 의결·공포한 관련 개정법률안 등은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8건은 수정 의결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용어 중 바뀐 용어를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등에서 “계류”를 “매어 놓은”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등에서 “주간에는 양 선박”을 “낮에는 2척의 선박”으로 바꾸었으며, “현”을 “벚전”으로, 또 항만법 등에서 “죽목”을 “대나무와 나무”로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이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해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장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 53.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05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대외 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라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법 개정으로서 이들은 주로 현행법의 용어와 자구 및 체계만을 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의미의 변화는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는바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 용어의 한글화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나 법률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입니다.

현행법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입니다.

셋째, 체계 정비를 통한 법률 문장의 간결·명확화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액

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0. 障 碍 人 福 祉 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1. 檢 疫 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2.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3.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4. 農 漁 村 等 保 健 醫 療 를 위 한 特 別 措 置 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5. 의리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김진표·김선미·김춘진·구논회·우제창·문학진·김낙순·장향숙·최재성·김덕규·백원우 의원 발의)

(17시1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항숙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장항숙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항숙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노회찬 의원, 정화원 의원, 장항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둘째,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의 영역을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행사, 5.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등, 6. 가정·복지 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라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넷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나 각 차별 영역별 세부적인 확대 계획과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화원 의원, 김기현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항숙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5건의 법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셋째, 장애인 실태조사를 현행 5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수화 통역,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넷째,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에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글 순화를 위하여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에서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을 요하는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둘째,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것입니다.

다음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글 순화를 위하여 제출한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약사 또는 한의사의 결격사유에서 ‘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판매업허가 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둘째,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애

자 의원, 정형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글 순화를 위하여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둘째,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며,

셋째,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복심 의원, 조일현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4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 이탈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범위를 현재는 지정받은 근무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써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장향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으로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용희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임채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6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3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7.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8.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9.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0.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2.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3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66항 먹는물관리법 전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폐의 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먼저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소음·진동규

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

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4.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5.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김동철·김태홍·서재관·신학용·양승조·유필우·이계안·이시중·장복심·주승용 의원 발의)

7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79.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43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3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4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상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사업의 경영 개선 목적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또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하천 관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신중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8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81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2인, 반대 6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0.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8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3.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84.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17시5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0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1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문석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82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

안, 의사일정 제83항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5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진영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진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는 동안에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그것 상의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품무역 자유화의 우선 시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협정안은 분야별 협상 목표, 경제협력 관련 일반원칙 및 이행기구 등의 기본 골격을, 상품협정안은 관세 인하, 철폐 등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사항을, 분쟁협정안은 경제협력 분야 등을 제외한 한·아세안 FTA 관련 모든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

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약 112억 3000만 유로(우리 돈으로 약 13조 4766억 원 상당의 현물, 현금)를 출자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분담금은 7255억 원으로 하고, 2008년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2006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분담금 중 현물로 제공되는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동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매년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석호 의원 단하로 나오며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저희 열린우리당만 한 게 아니고 민노당도 했고, 신당통합모임도 신청이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여기 대표들 누구 나오세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실 때 주택법 관련해 가지고 이미 한 차례 똑같이 양해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주택법을 가지고……)

(「주택법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사일정을 왜 양당 교섭단체만 하는 거야, 의사일정을 교섭단체끼리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회법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우선 합의들 하세요. 합의들 하시고, 의사일정 제8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게 해 주세요.)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얘기들 해 주세요. 그 동안에 각 당 대표들 얘기들 해 주세요.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세안과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난리 국면입니다. 오늘 올라온 한국과 아세안 FTA 안도 그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들이 많고 내용적으로도 허점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반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토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상을 열다섯 차례나 진행하면서 'FTA 절차규정'과 달리 국회에 한 번도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안과 달리 기본협정안과 분쟁협정안은 이미 2005년 말 서명을 했음에도 1년이 나 늦게 제출되어 국회의 내용 파악과 의견제시 기회가 봉쇄되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일에 임박해 12월 4일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 농해수위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통외통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 내용입니다.

정부는 별다른 피해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연간 최대 800억 가까이 예상되는 피해는 피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설사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방 여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인 농업과 수산업을 주관하는 상임위가 심사는커녕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의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정임에도 비용추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정 개정 시 국내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최소한 협정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평가, 법률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상식적 활동에 속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고용, 환경, 지역 영향평가와 더불어 국내 대책 역시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정부 당국의 무성의, 무책임감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번 아세안과의 FTA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도 ‘한국산 인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불안한 위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산지 인정 대상품목이 100개뿐이 안 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FTA에는 4625개, 한국과 유럽 자유무역연합 FTA에서는 267개인데 이에 비해서 100개에 불과합니다. 이들 FTA와 달리 아세안 회원국이 아무런 증명 없이 자국산업에 피해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면 역외가공 특례를 중지시킬 수도 있도록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이나 전방위적, 무차별적 품목에 대한 전면적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한미 FTA와 비교하면 백배나 나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싱가포르 FTA와 관세율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와 동시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결된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FTA에 중복되고 있는데도 관세율, 원산

지 규정 등 어떤 협정을 우선 적용할지 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쟁해결 절차도 중재패널 구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방이 패널 설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재패널을 임명하지 않으면 타방이 임명한 1명만으로 중재패널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판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 11월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이 다시 생각납니다. 지난해 6월 한·EFTA 비준동의 시에도 정부 측의 국회 기만행위에 대해 향후 정부가 업종, 경제, 법률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사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는 또다시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기만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행정부의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그대로 묵인한다면 술한 논란과 국민적 반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비준 과정에서도 이는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법 제83조에 의하면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상 절차법은 상임위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아세안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본회의가 만약에 동의를 해 준다면 국회 스스로 그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아세안 FTA 비준에 대해서 반대의 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강력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주십시오.)

찬반 토론 중입니다. 반대 토론 있으면 찬성 토론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찬성 토론 하세요.

○임종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강기갑 의원님께서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한·아세안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회 보고 절차나 국회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권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대 국회 상반기까지도 이들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러 여야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지금은 통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진행 중인 한미 FTA를 계기로 국회가 과거에 부족했던 정부로부터의 보고를 받는 역할과 꼼꼼하게 심사해 가는 기능들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꼭 강기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싱가포르나 한·EFTA에서 하고는 다르게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된 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EFTA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건에서 현재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력 상품들이 대부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든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중재패널문제도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아세안국가들 개별적으로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전체 중재패널 구성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1인 패널 구성을 가능토록 한 것이 오히려 우리보다는 아세안국가들에

훨씬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절차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과 상품협정 그리고 분쟁해결협정은 그 내용이나 의의에 비추어볼 때 조속한 비준과 발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맺는 거대 경제권과의 상품무역협정입니다. 태국이 제외된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시아 9개국과 상품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제4의 수출시장인 아세안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세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5대 교역국이고 4대 수출국이면서 3대 투자국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발효와 동시에 전체 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2010년까지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대부분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우리 농수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주요 농수산물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FTA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이나 소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 또 활어나 냉동 어류 등 우리 입장에서는 초민감품목들 대부분이 개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협정입니다. 그 외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 할당이라든지 소폭으로 관세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실 한·아세안 FTA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업계에서 이 협정에 대해 그다지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시장에서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주요국들이 FTA 체결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세안과 전체 차원에서 FTA 협정을 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고 호주와 인도도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업계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의 건

(18시20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민생국회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법은 민생국회의 중심내용이었습니다. 각 당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얘기했고 각 당의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국민도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은 뒤로 미뤄 둔 채 지금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살림을 살피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이에 기본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정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이제 3, 4월이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됩니다. 오늘 마땅히 처리되었어야 할 주택법은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법입니다. 부족한 법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지금 담겨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내용으로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사철이 임박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이견이 있는 그런 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쳐서 처리된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이 절박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땅히 이번 회기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악의 불모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억류하고 있는 주택법을 석방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뭐 했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의 손을 잡고 사학법 개악 협상의 파트너로 마주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생 인질극 정치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거래 정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무산시켰습니다.

두 당은 주택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절박한 민생현안인 주택법이 사학법 개악의 인질이 되는 오늘 국회의 상황을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택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조차 협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2월 임시국회처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사학법 개악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속내는 사학법을 개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마도 사학법 개악을 쟁점화해서 대선 정국에서 유리하게 활용하자라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략적인 이득에 목을 매는 정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학법 개악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지금이라도 즉시 주택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저히 이대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의 차이는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위해서는 5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비교섭단체 대표 등을 총망라해서 5시간 남은 동안에 부동산법을 포함해서 민생 입법을 처리하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정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처리된 80여 건의 안건은 국민들이 보면 국회의원들 사기 친다고 그러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왜 사기를 쳐!」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국민들이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80여 건의, 매우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양꼬 뺀 찌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언 품위 있게 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품위 없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정말 오늘 처리할 법이 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 법안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법 명확합니다. 제3당 교섭단체의원 양

형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영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5시간 남았습니다. 의장께서는 결단 내려 주시고, 각 교섭·비교섭단체 대표들은 정회를 하시고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5일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부동산법이 와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숙성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진실이라면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요? 그때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되면 6월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지금 처리하십시오.

(「의장님, 정회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법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님 말씀대로 부동산법이 숙성이 덜 됐다고 그러십시오. 숙성 다 된 국민연금법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이 돼 가지고 녹아 썩어져 버렸습니다. 맛이 식초가 돼 버렸습니다. 매일 800억 잠재 부채가 쌓인 법입니다. 이 법에는 30가지의 제도 개선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요? 한나라당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 법은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돼서 온 법입니다. 매년 1월 1일 전국의 300만 명 노인들이 학수고대한 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너무 시급합니다.

심재철 의원님!

치매·중풍 환자 55만 명 중에 16만 6000명이 내년 7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법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급한 법이 있고 중요한 법도 있습니다마는 사학법이 급한 법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이 매우 급한 법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당은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종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학법 근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고치자” 그랬습니다. 이제 사학법 문제는.....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종단이 ‘오케이’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 했습니다. 이제 사학법 문제는 한나라당과 종단이 협의해서 4월 국회에 상정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이 지지도는 오늘로 만약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급전직하…… 한나라당은 지금부터 ‘무책임 정당, 불효자 정당, 투기 비호 정당’으로 국민들이 부를 겁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이대로 회의 끝나선 안 됩니다. 정회해 주시고 부동산법 처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회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다음은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신당모임의 장경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서서는 아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양당 교섭단체가 논의해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는 분명히 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서 먼저 유감 표명을 해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우리가 다 민생국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8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내역을 공시한 주택법은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본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법사위에 있는 주택법을 빨리 처리하여 지금 오늘 본회의에 주택법을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건교위에서 주택법이 논란이 아주 있었습니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 3시까지 심의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의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다음에 또 심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한나라당의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사회까지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의 의결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주택법이 어떤 법입니까? 그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연될 때 강남의 급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제에서는 민생을 외면하는, 완전히 이중성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요동쳐서 이 정부가 실패하고, 그래야 반사이익으로 금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가슴이 이미 타 버려서 솟덩이가 됐습니다. 그런 시름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한나라당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번에 반드시 주택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물론 80개의 법안도 중요하다는 주택법만큼 시급한 법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다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본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지금 법사위를 열어서 주택법을 처리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주택법을 상정하여 오늘 반드시 주택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참으로 다급하시기는 다급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정회시키라고 난리들이신 거 보니까. 아마 이 광경을 국민들이 보신다면 누가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 사실들을 아실 겁니다. 가슴에 손 얹고 좀 반성해 보십시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당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탈당해 버리고, 대통령보고 “니도 탈당해라” 전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망친, 부동산정책을 망친 이 나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니! 대통령보고 나라니!」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이 발언 시간은……

(「나라니! 나라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뭐라고 했어요?

(「정회해!」 하는 의원 있음)

○이재웅 의원 앉으세요. 앉아서 해요.

고함지르고 이럴래, 정말!

(「대통령보고 나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았어! 나라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나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나라니! 그건 나중에 따져!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잠깐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재웅 의원 열린우리당의 탈당, 대통령 탈당 요구는……

○의장 임채정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아요!

○이재웅 의원 나라는 표현보다 더해! 왜 이래!

(장내 소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스스로 탈당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서 탈당하고, 대통령도 “탈당해 달라”, 모든 국무위원들 “다 탈당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의장 임채정 잠깐, 진정하세요.

○이재웅 의원 주택법을 가지고……

○의장 임채정 다음, 다음에……

○이재웅 의원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라, 국민들을 어지럽힌다…… 이것은 도대체 말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니가 뭐니까, 니가!」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한테 니가 뭐니까? 취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취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들어가요! 발언을 끝내고……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재웅 의원 발언을 끝내고……

(「들어가요!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중에 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국가원수를 보고 나라니!」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발언을 끝내도록 해야지……

(장내 소란)

조용히 해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 임채정 여러분! 지금 장내 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니까 조용히 해서 발언이 끝날 때까지 들으세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때는 잡아갔어, 국가원수모독죄로!」 하는 의원 있음)

내 발언이…… 이거 왜 이래요?

(「민주화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장내 질서를 지켜 주세요.

발언 사과 문제는 다음에 다시 발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시기로 하고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의장님! 장내 정리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웅 의원 좀 질서를 잡아 주시고……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발언 내용…… 발언 내용은 추후 검토합니다. 발언 내용은 추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이재웅 의원 의사를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사과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자, 질서를 지켜 주세요.

(「대통령보고 나라니!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웅 의원 의장님!

○의장 임채정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이재웅 의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발언 시간이, 허용받은 발언 시간은 정당하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임채정 여러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를 지켜 주세요!

(「사과하세요! 여기는 국회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의장님이 사과받지 못하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지금 사과를 받으려…… 이 정도에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따가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에 따라서 나도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발언을 정상화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장내 소란)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이렇게 되면 발언 못 하고 회의 진행 안 됩니다.

○이재웅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요!

(「사과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이렇게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웅 의원 이렇게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또 탈당한 사람들이 발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자를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자?

그전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의장 임채정 어떻게, 어떻게들 하려고들 그래요?

○이재웅 의원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와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문제 아니요!

(장내 소란)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 안 되니까, 회의가 진행 안 되니까……

(「의장님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데……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청래 의원 단상에서 - 사과하세요!)

○이재웅 의원 내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 내가 응답을 할 필요가 없어!

(「정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시든지, 발언 도중에 왜 이럽니까?

○의장 임채정 들어들 가요. 들어들 가!

○이재웅 의원 발언 도중에 왜 이럽니까? 발언을 다 마치고 책임을 지게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발언을 다 마치고 하셔야지……

(장내 소란)

발언을 다 마치게 하고, 발언을 다 마치고 항의를 하든지 하세요! 그게 순서잖아요?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자, 일단 들어가 주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들 들어가세요, 모두!

○이재웅 의원 발언을 다 마치고, 발언을 다 마치고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합니다. 한마디도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을 다 듣고 하세요, 발언을 다 듣고.

(「사과부터 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의장이 들어가라 하시는데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사과하고 발언하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에 사과를 해야 발언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의장님이 들어가라시잖아요? 들어가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는 못 들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하란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웅 의원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왜 이래요?

(「국가원수한테 니가 뭘니까, 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하시고 주택법에 대해서 3당이 협의하도록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이래요?

(「의장님이 들어가라시는데 들어가요! 의장님 보고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사과 안 하면 발언 진행 못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든 못 하든 의장님이 하시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못 듣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의장님이 진행하는 거지 회의 진행을 열린 우리당이 하나요?」 하는 의원 있음)

(「니가 뭐니까, 니가? 할 말 못 할 말 다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정회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병석 수석님! 주택법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하겠다고 지금 의장님에게 정회 제안을 하십시오, 빨리」 하는 의원 있음)

자, 조용들 하시고 들어가시고……

(「끝까지 발언을 들으시고 판단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것을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고……

사과하고 안 하고는 발언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나한테 사과하라면 사과할 것 같습니까?

(장내 소란)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마 니라는 소리보다는 탈당한 데 책임, 주택 정책에 대한 책임이……

○의장 임채정 여러분! 자, 이재웅 의원 발언을 시키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또 발언하세요. 이재웅 의원 발언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언하세요, 여러분이!

(장내 소란)

○이재웅 의원 들어가세요.

(「막말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들어가야 무슨 조치를 하든지 나중에 발언을 하든지……」 하는 의원 있음)

(「남 발언하는데 와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부터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왜 아까는 법대로 하자고 그러더니 지금은 법대로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 하자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이의 제기할 분은 하란 말이에요! 지금 발언시간에는 발언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말실수하신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한국말을 앞말 뒷말 다 들어 보고 판단해야지 중간에 뒷말을 자르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다 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을 가로막고 삿대질하는 그런 것은 사과 안 해도 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말을 듣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고…… 발언 시작하자마자 야유를 넣고 온갖 고함을 지르고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비신사적인 사람들……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니가 뭐니까, 니가?」 하는 의원 있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비신사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이 비신사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막말하는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사기집단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사기꾼이라고 누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지금 장내 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합의를 거쳐서 정회를 선

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	심재철

안 경 륜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영 호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륜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용 규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성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공 성 진 김 애 실 이 상 배 최 연 희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한국법학원 육성법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해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업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반대 의원(14인)

김 애 실 김 영 선 김 종 룡 박 계 동
 박 승 환 송 영 선 이 계 경 이 계 진
 이 성 구 이 종 구 이 해 봉 차 명 진
 최 경 환 한 선 교

기권 의원(16인)

강 성 중 공 성 진 김 기 춘 김 용 갑
 김 정 권 김 희 정 박 찬 숙 심 재 철
 유 승 민 이 상 배 이 혜 훈 임 종 석
 임 태 희 정 갑 윤 정 화 원 정 희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해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호영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승환

기권 의원(5인)

이상배	이영순	정갑윤	정의화
-----	-----	-----	-----

주승용

○공약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재오 이재용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성 최병국 최용규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박세환 박승환

○이자제한법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용
 이종걸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2인)

김애실 김종률 김효석 노회찬
 맹형규 박승환 박찬숙 심재엽
 우제창 유승민 이계경 이영순
 이재창 이종구 이한구 임태희
 정의화 주호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현애자

기권 의원(10인)

강성종 권영길 김석준 단병호
 서혜석 이계진 이미경 이영호
 천영세 최순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공성진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고홍길 최순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윤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향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임인배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구
한선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기권 의원(2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신명현	애자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기춘	김용갑	이상배	이해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현 애 자
(이계진 의원석 버튼 미작동. 실제 찬성 의원
217인, 기권 의원 5인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단 병 호 박 계 동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희 상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우재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김충환	김대년	김태홍	김태환
이규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이미경	이방호	이상경	이상득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문병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임인배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명옥
전여욱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양승조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우원식	우제창	우재항	원혜영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원희룡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조순형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낙연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황우여	황진하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욱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반대 의원(1인)

강성종

기권 의원(1인)

권경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강 성 중

기권 의원(1인)

한 광 원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강 성 중 김 영 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희 상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物價安定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안정률 안명옥
 심재엽 심재철 안상수 안홍준
 안민석 안상수 안영식 오영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향 원혜영
 우원식 우제창 유승민 유인태
 원희룡 유기홍 유필우 윤건영
 유재건 유정복 유호중 이강래
 윤두환 윤원호 이계경 이계진
 이경숙 이군현 이낙연 이병석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목희 이상득 이승희 이시종
 이상경 이성권 이원복 이원영
 이성구 이영호 이인기 이인영
 이영순 이은영 이재웅 이재창
 이윤성 이재오 이주호 이진구
 이인제 이종구 이화영 임인배
 이종걸 이해봉 장경수 장복심
 이한구 이해규 장성호 정세균
 임종인 임해숙 전병헌 전여옥
 장영달 장향숙 정성호 정중복
 정갑윤 정동채 정창선 정형근
 정의용 정의화 정청래 정영근
 정진석 정진섭 조성태 조순형
 정희수 제종길 조성희 최경환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최성
 차명진 채수찬 최규식 최인기
 최구식 최연희 최용규 최병도
 최순영 최철국 한광원 한미영
 최재성 최철휘 현애자 홍진하
 한선교 허천표 홍창선 황진하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결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안정률 안명옥 심재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향 원혜영
 우원식 우제창 유승민 유인태
 원희룡 유기홍 유필우 윤건영
 유재건 유정복 유호중 이강래
 윤두환 윤원호 이계경 이계진
 이경숙 이군현 이낙연 이병석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목희 이상득 이성권 이승희
 이상경 이성구 이영호 이원복
 이석현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시종 이윤성 이인제 이재웅
 이원영 이윤성 이인제 이주영
 이재창 이종걸 이한구 이해봉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해규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해숙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기권 의원(1인)

이상배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영숙 김태홍 박세환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혜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혜숙 송영선

○**滯納租稅의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
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0인)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臨時土地收得稅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영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재오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종구
 이재웅 이재창 이진구 이한구
 이주영 이주호 이화영 임인배
 이해봉 이혜훈 이화심 장영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정갑윤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정의용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석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영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진영환 최구식
 채수찬 천영세 최병국 최인기
 최규성 최연희 최용규 최한도
 최순영 최철국 한광원 홍미영
 최재성 최철휘 현애자 홍우여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선미 김현미 이미경 이상배

○新聞用紙에對한關稅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재건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두환
유필우	윤건영	이강래	이경숙
윤호중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강래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계진	이영순	이윤성	이석현
이시종	이시종	이시종	이시종
이원영	이원영	이원영	이원영
이인제	이인제	이인제	이인제
이종구	이종구	이종구	이종구
이한구	이한구	이한구	이한구
임인배	임인배	임인배	임인배
장영달	장영달	장영달	장영달
정갑윤	정갑윤	정갑윤	정갑윤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진석	정진석	정진석	정진석
정희수	정희수	정희수	정희수
조일현	조일현	조일현	조일현
차명진	차명진	차명진	차명진
최구식	최구식	최구식	최구식
최성인	최성인	최성인	최성인
최인기	최인기	최인기	최인기
한병도	한병도	한병도	한병도
홍미영	홍미영	홍미영	홍미영
황우여	황우여	황우여	황우여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 태 홍 안 상 수 이 영 호 이 원 복
 최 규 식

문 회 상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엮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안 흥 준 이 상 배

○韓國米穀倉庫株式會社와韓國運輸株式會社의合併
 에附隨되는諸稅免除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중 료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중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안 흥 준 이 상 배

○歸屬法人의株主總會召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0인)

강기갑 강창일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강혜숙 강홍길 정형근 정희수 정제종 정성태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수희 김진영 차명진 채수찬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성 김명자 김명자 김명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부겸 김석준 김애실 김애실 김영숙
 김명주 김무성 김송자 김영선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중률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영선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중률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중률 김태년
 김영주 김원웅 김재훈 김충환 김태년 김혁규 김효석
 김원기 김정권 김춘진 김학송 김형주 김효래 노웅래
 김재윤 김춘진 김형오 노영민 노병호 문계동 박성범
 김진표 김태환 김형오 노영민 노병호 문계동 박성범
 김태홍 김형오 남경필 노영민 노병호 문계동 박성범
 김희정 남병호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박계동 박성범
 노현송 단병호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박계동 박성범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상돈 박진 배일도 서재관
 박명광 박병석 박승환 박영선 배기선 배일도 서재관
 박찬숙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서영선 신상진 안경률
 백원우 서병렬 신기남 신명철 안경률 안홍준 염동연
 서혜석 신기남 신명철 안경률 안홍준 염동연 유기준
 신국환 신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염동연 유기준
 신학용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염동연 유기준 유인태
 안명옥 안형일 염호성 염동연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양승조 양형혜 영원희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건영
 오영식 오제세 유원희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건영
 우체창 원혜영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건영 이강래
 유기홍 유정복 유원희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건영
 유재건 유원호 이계진 이광철 이병석 이영순 이은영
 윤두환 이경재 이낙연 이방호 이석현 이시종 이은영
 이경숙 이규택 이낙연 이방호 이석현 이시종 이은영
 이목희 이상배 이시종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상경 이승희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한구
 이원복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진구 임해규 이한구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진구 임해규 이한구 규숙
 이재웅 이주호 임인배 임해규 이한구 규숙 장향숙
 이주영 이화영 임인배 임해규 이한구 규숙 장향숙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해규 이한구 규숙 장향숙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갑윤 장동채 정의화
 전여옥 장재희 정의화 장갑윤 장동채 정의화 장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장갑윤 장동채 정의화 장동채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정제종 정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김수희 김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규식 최병국 최구식 최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성종 이혜훈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중률 김춘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박재완 박진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안경률 안명옥
 심재엽 심재철 안상수 양승조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염동연
 양형일 염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희 유선호 유승민
 유원희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광철
 이병석 이영순 이은영 이재오
 이종구 임해규 이한구 규숙
 장향숙 장영달 장갑윤 장동채
 정의화 장갑윤 장동채 정의화 장동채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김 우 남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김 재 원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김 재 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김 태 년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김 혁 규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낙 연 김 효 석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김 호 래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노 응 래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성 범 문 병 호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박 계 동 박 명 광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박 재 완 박 순 자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박 회 태 배 기 선 박 찬 석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서 병 수 서 상 기 배 일 도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서 상 기 배 일 도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해 규 신 기 남 신 명 철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심 재 철 안 경 륜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안 상 수 안 홍 준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양 형 일 엄 호 성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오 제 세 우 원 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우 원 혜 영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우 원 회 룡
 주 승 용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유 선 호 유 승 민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유 재 건 유 필 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이 경 숙 이 계 경 이 낙 연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인 기 이 광 철 이 목 회 이 방 호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배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흥 미 영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황 진 하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주 호 이 혜 훈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해 봉 장 경 수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장 경 수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해 규 전 병 현 전 여 옥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현 정 동 채 정 성 호
 전 재 회 정 갑 윤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칭 래 정 형 근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칭 래 정 청 래 정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조 성 태 조 순 형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기권 의원(2인)

문 학 진 이 윤 성

○歲入補填國債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운 김 원 권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재 윤 김 재 표 김 정 권 김 충 환 김 정 훈
 김 진 표 김 태 홍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김 희 정
 김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김 현 송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김 현 송
 문 석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박 명 광 박 명 자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찬 석 박 찬 석 박 찬 석
 배 기 선 배 일 도 배 일 도 배 일 도
 배 기 선 배 일 도 배 일 도 배 일 도
 서 상 기 서 상 기 서 상 기 서 상 기
 서 상 기 서 상 기 서 상 기 서 상 기
 신 명 철 신 명 철 신 명 철 신 명 철
 신 명 철 신 명 철 신 명 철 신 명 철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상 수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원 식
 유 선 호 유 선 호 유 선 호 유 선 호
 유 선 호 유 선 호 유 선 호 유 선 호
 유 필 우 유 필 우 유 필 우 유 필 우
 유 필 우 유 필 우 유 필 우 유 필 우
 이 계 경 이 계 경 이 계 경 이 계 경
 이 계 경 이 계 경 이 계 경 이 계 경
 이 목 회 이 목 회 이 목 회 이 목 회
 이 목 회 이 목 회 이 목 회 이 목 회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상 민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영 호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은 영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주 영
 임 해 규 임 해 규 임 해 규 임 해 규
 임 해 규 임 해 규 임 해 규 임 해 규
 전 병 현 전 병 현 전 병 현 전 병 현
 전 병 현 전 병 현 전 병 현 전 병 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동 채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칭 래 정 칭 래 정 칭 래 정 칭 래
 정 칭 래 정 칭 래 정 칭 래 정 칭 래
 조 성 태 조 성 태 조 성 태 조 성 태
 조 성 태 조 성 태 조 성 태 조 성 태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채 수 찬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성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순 영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최 재 성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권 오 을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체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대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반대 의원(2인)

이 승 희 한 선 교

기권 의원(2인)

박 성 범 심 재 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현 미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김 희 정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노 현 송
 문 학 진 문 회 상 박 명 광 문 석 호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승 환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배 일 도 배 일 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이미경	이방호	이상경	이상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화영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임인배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정동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이계경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영	이기우	이낙연	이광철	이균현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국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천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창선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황우여	황진하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기권 의원(1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진수희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계경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기우	이낙연	이광철	이균현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6인)
 고경화 김용갑 박성범 송영선
 유기준 이한구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반대 의원(6인)

강성종 김애실 김혁규 박병석
 이석현 홍창선

기권 의원(5인)

신명 유필우 이승희 이영호
 이한구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9인)

강기갑	강성종	권영길	단병호
류근찬	이승희	임종인	천영세
최순영			

기권 의원(8인)

김낙성	박상돈	송영선	심재철
이재오	이한구	조배숙	홍미영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이 광 철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구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이 재 오	이 재 용	이 재 창	이 종 걸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스포츠산업 진흥법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3인)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기권 의원(3인)

배일도 이영호 이진구

(김희정 의원석 버튼 미작동. 실제 찬성 의원 196인, 기권 의원 3인임)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명규 이광철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반대 의원(1인)

이강두

기권 의원(6인)

김동철 김정권 배일도 심재덕
이용희 이한구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04인)****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상돈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홍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반대 의원(3인)

김종률 박승환 허태열

기권 의원(7인)

김정권 박병석 배일도 송영선
이주호 이한구 제종길

(김재윤 의원석 버튼 미작동. 실제 찬성 의원 194인, 기권 의원 7인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98인)****찬성 의원(19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안상수 안양승 안양형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박영선 박재완 박진진 박찬숙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낙연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신명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이원복 이원영 이운성 이재오 이재웅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인기 이인영 이재우 이주영 이혜훈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이재창 이한구 이해봉 이혜규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진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희수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차명진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천영세 최구식 최연희 최철국 이종구 이주영 이혜훈 임인배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천 허준표 이한구 이해봉 이해규 장경수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재형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전병헌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두언
 홍창선 배일도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희수
 조배숙 조성태 차명진 최규성 최용규 최연희 최선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기권 의원(1인)

배일도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영호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한구 이해봉 이해규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차명진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천영세 최구식 최연희 최철국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천 허준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鄉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권오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김기현 김권철 김광원 김근태
 김덕룡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무성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송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우남 김양수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원웅 김재경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이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시중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차 명진천 영세최 구식성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원열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최천여
 한병도 한선교 허천우

이성구 이용희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양수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종률
 김정훈 김태년 김진표 김태홍
 김충환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상수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식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우윤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계경 이계진 이병석
 이석현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해봉 임태희 임해규 임해규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의용
 정청래 조배숙 조진수 최구식
 최성원 최천여 최원열 허태열
 강기정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홍길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양수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김태년 김진표 김태홍
 김형오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영선
 박진진 박찬숙 박희태 박희태
 배일도 배일도 백원우 서병렬
 서재관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송영선 신기남 신명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상수
 안명옥 안민석 안영식 안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원식 원혜영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재건
 유승희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계경 이경재 이계경 이병석
 이명규 이명규 이영호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인영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혜훈
 임태희 임태희 임해규 임해규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병헌
 장복심 장향숙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진수 최구식
 최성원 최천여 최원열 허태열
 강기정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홍길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양수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김태년 김진표 김태홍
 김형오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영선
 박진진 박찬숙 박희태 박희태
 배일도 배일도 백원우 서병렬
 서재관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송영선 신기남 신명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상수
 안명옥 안민석 안영식 안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원식 원혜영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재건
 유승희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계경 이경재 이계경 이병석
 이명규 이명규 이영호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인영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혜훈
 임태희 임태희 임해규 임해규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병헌
 장복심 장향숙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청래

기권 의원(2인)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나경원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 의원(3인)
 권오을 김덕규 이원복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우윤근	우제항	우원혜	우원회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이재창	이종결	이종구	이주영	우제항	원혜영	원회룡	유기준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진병헌	진여옥	진재희	정갑윤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정성호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종결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임인배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장복심	장향숙	진병헌	진여옥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홍준표	황우여			정문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기관 의원(2인)

박계동 이원복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윤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성영
 최규식 최병국 최철국 한광원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허태열
 한병도 한선교 허준표 홍창선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고경화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원웅 김재경 김종률 김진표
 김정권 김정훈 김태년 김태홍
 김춘진 김충환 김형오 김형주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윤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정갑윤 정성호 정진석
 정진섭 조성태 진영 최성영
 최순영 한광원 허태열 홍창선
 정성호 정의화 정청래 정희수
 정진섭 정청래 조순형 조정식
 제종길 조순형 진수희 차명진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천영세 최구식 최순영 최연희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김 송 자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중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심 재 덕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중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중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강기정 박계동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윤성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강진화	강홍길	고성진	고경석
김희정	김경원	김남필	김노래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심재철	안정률	안명옥	안민석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심재엽	심재철	안정률	안명옥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엄호성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기권 의원(2인)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김애실	심재덕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전 병 헌 정 진 석

임 인 배 임 종 인 임 태 희 임 해 구
 장 경 수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중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웅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배 기 선 배 일 도 흥 미 영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낙 연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성 구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석 현 이 용 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은 영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재 창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김 성 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강혜숙	강경화	강조석	강진화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강홍길	강성오	강권철	강권선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강권영	강권오	강권철	김광원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춘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심재엽	심재철	안정률	안민석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신재엽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양승조	양형일	안경률	안상수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오영식	오제세	엄호성	염동연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우원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승용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4인)

김근태 김영숙 안민석 임종인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원혜영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박승환

(조경태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199인, 기권 의원 1인임)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최연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조일현	최규성	홍미영
-----	-----	-----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안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성구	이병석	이석현
이용희	이은영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이재창	이원영	이영호
이재창	이주호	이인영	이영호
이주호	임종석	이종구	이영호
임종석	장복심	이종구	이영호
장복심	전재희	이혜훈	이영호
전재희	정성호	임해규	이영호
정성호	정진섭	장경수	이영호
정진섭	제종길	전여옥	이영호
제종길	주승용	정두연	이영호
주승용	천영세	정진석	이영호
천영세		정희수	이영호
		조정식	이영호
		차명진	이영호
		천영세	이영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김 종 룰 이 균 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일 현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나경원	남경필	김노웅	김노현	강진화	강홍길	고성진	고권선
류근찬	문병호	김문석	김문학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부겸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정두언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균현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석현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해봉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황우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신상진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97인, 기권 의원 없음)

○障碍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김희정 정송진 석환숙 우관선 용석률 호성영 혜영 이광철 이시종 이윤성 이재웅 이주영 이혜훈 장경수 전병현 정동채 정의화 정청래 조배숙 진수희 천정배 최순영 한광원 허태열 홍창선
 강창일 강홍길 권오을 김기현 김덕룡 김선미 김양수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김태홍 김형주 남경필 문병호 민병두 박성범 박영선 배기선 서병수 신명 심재철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경재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시종 이윤성 이재웅 이주영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병현 정동채 정의화 정장선 정형근 조일현 진영 차명진 최규식 최용규
 김희정 정송진 석환숙 우관선 용석률 호성영 혜영 이광철 이시종 이윤성 이재웅 이주영 이혜훈 장경수 전병현 정동채 정의화 정청래 조배숙 진수희 천정배 최순영 한광원 허태열 홍창선
 강창일 강홍길 권오을 김기현 김덕룡 김선미 김양수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김태홍 김형주 남경필 문병호 민병두 박성범 박영선 배기선 서병수 신명 심재철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경재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시종 이윤성 이재웅 이주영 이혜훈 임종석 장복심 전병현 정동채 정의화 정장선 정형근 조일현 진영 차명진 최규식 최용규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낙 연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체 중 길 조 배 숙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반대 의원(1인)

이 영 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정 훈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중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영호

기권 의원(2인)

이해봉 전재희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중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반대 의원(1인)

이영호

기권 의원(3인)

송영선 이해봉 제종길

○農漁村等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이해봉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이계진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주호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채정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홍창선	황우여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반대 의원(1인)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주승용
이영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름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일 현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흥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심 재 철 안 경 름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주 승 용 진 수 희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름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현 미

기권 의원(1인)

진 영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주승용	제진수	최영성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순영	최규식
최병국	최성국	최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이시종 전재희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案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김희송	류근찬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정동채 정장선 정형근 조일현 차명진 최규식 최연희 한병도 현애자 홍창선
 전여옥 정두언 정진석 정희수 주승용 천영세 최병국 최용규 한선교 홍미영 황우여
 전재희 정세균 정진섭 제종길 진수희 최구식 최성국 최철국 허천형 홍재형
 정갑윤 정의화 정청래 조배숙 진영 최규성 최순영 한광원 허태열 홍준표

이낙연 이병석 이성구 이원영 이인영 이종구 이해봉 장경수 전여옥 정두언 정진석 정희수 주승용 천영세 최병국 최용규 한선교 홍재형
 이명규 이상득 이승희 이윤성 이재웅 이주영 이혜훈 장복심 전재희 정세균 정진섭 제종길 진수희 최구식 최성국 최철국 허천형 홍준표
 이미경 이상배 이시종 이은영 이재창 이주호 임채정 장영달 정갑윤 정의화 정청래 조배숙 진영 차명진 최규식 최연희 한병도 홍미영 황우여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성종 고조홍 권선택 김광원 김덕규 김석준 김애실 김영춘 김원웅 김종률 김태년 김형오 나경원 류근찬 박명광 박세환 박재완 배기선 서병수 신병렬 신명심 재철 양승조 오영식 우제항 유선호 유정복 이강두 이계진
 강기정 강재섭 고진화 권영길 김기현 김덕룡 김선미 김양수 김용갑 김재경 김진표 김태홍 김형주 남경필 문병호 박병석 박순자 박진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안경률 양형일 오제세 원혜영 유승희 이광철
 강길부 강혜숙 고홍길 권오을 김낙성 김명자 김성곤 김영숙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김태환 김효석 노웅래 문희상 박상돈 박승환 박찬숙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심재엽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기우
 강봉균 고경화 권경석 권철현 김낙순 김부겸 김송자 김영주 김원기 김정권 김충환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민병두 박성범 박영선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심재엽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기우

기권 의원(1인)

김동철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갑 강성종 고조홍 권선택 김광원 김덕규 김부겸 김송자 김영주 김원기 김정권 김충환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민병두 박성범 박영선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심재엽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기우
 강기정 강재섭 고진화 권영길 김기현 김덕룡 김선미 김양수 김용갑 김재경 김진표 김태홍 김형주 남경필 문병호 박병석 박순자 박진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안경률 양형일 오제세 원혜영 유승희 이광철
 강길부 강혜숙 고홍길 권오을 김낙성 김명자 김성곤 김영숙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김태환 김효석 노웅래 문희상 박상돈 박승환 박찬숙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심재엽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기우
 강봉균 고경화 권경석 권철현 김낙순 김부겸 김송자 김영주 김원기 김정권 김충환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민병두 박성범 박영선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심재엽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원호 이기우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박영선	박진	박희태	배기선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학용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유기준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종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세균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조배숙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정두연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정희수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반대 의원(4인)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6인)

강성종	이미경	이원영	이종걸
이해봉	제종길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형오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경원
 김형주 김효석 김희송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강래 이경숙
 윤원호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경재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낙연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준표
 홍창선 홍우여 홍재형 홍준표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강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중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송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명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민석 안성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석현 이영순 이시종 이인기
 이종걸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임종심 정갑윤 정의화 정청래
 조배숙 진수희 최구식 최성
 최한광원 홍준표 홍준표
 정동채 정진석 정희수 제종길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준표
 홍창선 홍우여 홍재형 홍준표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권영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기권 의원(4인)
 박세환 양승조 이미경 이원영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기권 의원(2인)
 박세환 박영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오제세	우상호	우제항	원혜영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원영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장복심	장영달	전여옥	전재희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정동채	정두언	정세균	정의화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정형근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황우여	황진하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반대 의원(7인)

강기갑	권영길	우원식	이영순
정희수	천영세	최순영	

기권 의원(5인)

강성종	박세환	이미경	정갑윤
제종길			

(박찬숙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5인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기권 의원(3인)

강성종	권철현	임해규
-----	-----	-----

○韓國土地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6인)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홍준표		

기권 의원(8인)

김용갑	박세환	박영선	배일도
송영선	이미경	제종길	조배숙

○출석 의원(2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우원혜 영원회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허 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6인)

곽성문 문희 박종근 장윤석
 지병문 채일병

○청가 의원(2인)

이상열 한명숙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환경부장관 이치범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법무부차관 김정진
 행정자치부제1차관 최양식
 문화관광부차관 박양우
 농림부차관 박해상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재훈
 정보통신부차관 유영재
 보건복지부차관 변성진
 노동부차관 김성중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해양수산부차관 이정해
 기획예산처차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태량
 입법차장 민동기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명	교섭단체	연월일
방송통신특별	김덕규	열린우리당	2007. 3. 2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명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안영근
 2007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7일간)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방	이근식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2007. 2. 13
행정자치	강창일	열린우리당	
	노현송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과학기술 정보통신	강성종	열린우리당	
	변재일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정보	선병렬	열린우리당	2007. 2. 20
	최용규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정무	김한길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2007. 2. 21
재정경제	우제창		
문화관광	정청래	열린우리당	
	전병헌		
산업자원	우제항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환경노동	제종길		
건설교통	정장선	열린우리당	
	주승용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방송통신 특별	이재웅 홍창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2007. 3. 2
2012년여 수세계박 람회유치 특별	서갑원 주승용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2007. 3. 5

○상임위원 보임

위원명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최용규	정보	중도개혁통합 신당추진모임	2007. 2. 13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방송통신 특별	강성종	유승희	열린우리당	2007 2. 12

○정보위원회 위원직 상실

위원회	위원명	사유	연월일
정보	유선호	국회법 제48조제3항 (소속교섭단체 제적)	2007. 2. 7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월일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최용규	2007. 2. 12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교섭단체	소속의원	연월일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모임	강봉균 김낙순 김한길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양형일 염동연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근식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주승용 최규식 최용규 (이상 23인)	2007. 2. 12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우윤근	열린우리당	2007. 2. 10
김태홍		2007. 2. 12

○의안 제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정문헌·송영선·유기준·박세환·신상진·박재완·김애실·고조흥·임해규·이주호·김명주 의원 발의)

2월 1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박세환·심재엽·배일도·이해봉·고조흥·신상진·김중환·이재웅·이군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발의)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손봉숙·강혜숙·김태년·김효석·노현송·박상돈·신중식·우제창·유제건·정진섭·최성 의원 발의)

2월 13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김재원·정희수·정갑윤·김명주·박상돈·황우여·박계동·이상배·김태환·김영덕·홍문표·김광원·이규택 의원 발의)

2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상민·선병렬·강혜숙·조경태·강창일·이광철·강기정·유승희·이경숙·정청래·김재윤·임종인·김선미·한병도·지병문·장향숙·윤원호·문학진·이종걸·김희선·김영주·유선호·김태홍·정봉주 의원 발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상민·선병렬·강혜숙·조경태·강창일·이광철·강기정·유승희·이경숙·정청래·김재윤·임종인·김선미·한병도·지병문·장향숙·윤원호·문학진·이종걸·김희선·김영주·유선호·김태홍·정봉주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김애실·한선교·박형준·고홍길·박성범·박상돈·차명진·이한구·권경석·이명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영호·문학진·문석호·김한길·정봉주·민병두·최재성·조경태·최철국·김형주·강길부·노웅래·최규성·정장

선 · 조일현 · 김태홍 · 우윤근 · 김우남 의원 발의)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미경 · 박기춘 · 원혜영 · 이근식 · 문석호 · 김태년 · 노현송 · 이은영 · 강혜숙 · 김태홍 · 이상호 · 이목희 · 노웅래 · 정청래 · 김근태 · 김교홍 · 이인영 · 김희선 · 윤호중 · 김재윤 · 이광철 · 정병국 · 유기홍 · 박찬석 · 임종인 · 김형주 · 장향숙 · 오제세 · 강기정 · 안민석 · 윤원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미경 · 박기춘 · 원혜영 · 이근식 · 문석호 · 김태년 · 노현송 · 이은영 · 강혜숙 · 김태홍 · 이상호 · 이목희 · 노웅래 · 정청래 · 김근태 · 김교홍 · 이인영 · 김희선 · 윤호중 · 김재윤 · 이광철 · 정병국 · 유기홍 · 박찬석 · 임종인 · 김형주 · 장향숙 · 오제세 · 강기정 · 안민석 · 윤원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미경 · 박기춘 · 원혜영 · 이근식 · 문석호 · 김태년 · 노현송 · 이은영 · 강혜숙 · 김태홍 · 이상호 · 이목희 · 노웅래 · 정청래 · 김근태 · 김교홍 · 이인영 · 김희선 · 윤호중 · 김재윤 · 이광철 · 정병국 · 유기홍 · 박찬석 · 임종인 · 김형주 · 장향숙 · 오제세 · 강기정 · 안민석 · 윤원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미경 · 박기춘 · 원혜영 · 이근식 · 문석호 · 김태년 · 노현송 · 이은영 · 강혜숙 · 김태홍 · 이상호 · 이목희 · 노웅래 · 정청래 · 김근태 · 김교홍 · 이인영 · 김희선 · 윤호중 · 김재윤 · 이광철 · 정병국 · 유기홍 · 박찬석 · 임종인 · 김형주 · 장향숙 · 오제세 · 강기정 · 안민석 · 윤원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미경 · 박기춘 · 원혜영 · 이근식 · 문석호 · 김태년 · 노현송 · 이은영 · 강혜숙 · 김태홍 · 이상호 · 이목희 · 노웅래 · 정청래 · 김근태 · 김교홍 · 이인영 · 김희선 · 윤호

중 · 김재윤 · 이광철 · 정병국 · 유기홍 · 박찬석 · 임종인 · 김형주 · 장향숙 · 오제세 · 강기정 · 안민석 · 윤원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7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미경 · 박기춘 · 원혜영 · 이근식 · 문석호 · 김태년 · 노현송 · 이은영 · 강혜숙 · 김태홍 · 이상호 · 이목희 · 노웅래 · 정청래 · 김근태 · 김교홍 · 이인영 · 김희선 · 윤호중 · 김재윤 · 이광철 · 정병국 · 유기홍 · 박찬석 · 임종인 · 김형주 · 장향숙 · 오제세 · 강기정 · 안민석 · 윤원호 의원 발의)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김낙성 · 홍문표 · 신중식 · 신국환 · 류근찬 · 김우남 · 이인제 · 정진석 · 한광원 · 우윤근 · 심재덕 · 조경태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영호 · 문학진 · 문석호 · 김한길 · 정봉주 · 민병두 · 최재성 · 조경태 · 최철국 · 김형주 · 강길부 · 노웅래 · 최규성 · 정장선 · 조일현 · 김태홍 · 우윤근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강길부 · 최병국 · 정갑윤 · 윤두환 · 김기현 · 정몽준 · 권철현 · 유기홍 · 김영춘 · 이경숙 · 민병두 · 김영숙 · 김교홍 · 최재성 · 이은영 · 정봉주 · 정문헌 · 이근현 · 안민석 · 이시종 · 박기춘 · 홍창선 · 박상돈 · 김양수 · 한광원 · 조경태 · 문석호 · 신학용 · 유인태 · 이상호 · 박명광 · 오제세 · 변재일 · 노영민 · 유필우 · 김혁규 · 홍재형 · 이미경 · 김근태 · 양승조 · 정종복 의원 발의)

2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노웅래 · 한광원 · 박찬석 · 장복심 · 정청래 · 김재윤 · 변재일 · 이상호 · 강길부 · 우원식 · 양승조 · 서혜석 · 이광철 · 전병헌 · 장향숙 의원 발의)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이윤성 · 황우여 · 심재철 · 이인기 · 김태년 · 권오을 · 윤두환 · 김태환 · 안명옥 · 이해봉 의원 발의)

2월 14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박명광 · 임태희 · 엄호성 · 정장선 · 정동채 · 정세균 · 염동연 · 김영주 · 강기정 · 김동철 · 김우남 · 서혜석 · 서갑원 · 김부겸 · 최인기 · 이석현 · 신중식 · 이강래 · 박상돈 · 이영호 · 김태년 · 김재홍 · 강혜숙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김영덕 · 이영호 · 김우남 · 한광원 · 홍문표 · 김명주 · 신중식 · 정문헌 · 김광원 · 류근찬 · 배일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김애실 · 이해봉 · 차명진 · 이한구 · 박형준 · 신상진 · 권경석 · 배일도 · 이명규 · 이인기 의원 발의)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우원식 · 장향숙 · 김근태 · 최규성 · 이기우 · 문학진 · 신중식 · 이목희 · 김형주 · 조정식 · 노웅래 · 제종길 · 김낙순 · 장복심 · 노영민 의원 발의)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이광철 · 이계진 · 이목희 · 우상호 · 정청래 · 강혜숙 · 김재윤 · 이은영 · 강기정 · 윤원호 의원 발의)

2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7. 2. 13 우원식 · 장향숙 · 김근태 · 최규성 · 이기우 · 문학진 · 신중식 · 김형주 · 조정식 · 노웅래 · 제종길 · 김낙순 · 장복심 · 노영민 의원 발의)

2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7. 2. 14 박재완 · 안상수 · 정병국 · 이인기 · 김정훈 · 황우여 · 신상진 · 정중복 · 임태희 · 이주호 · 정형근 의원 발의)

2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7. 2. 14 김기춘 · 이종구 · 권경석 · 황진하 · 최병국 · 김용갑 · 이해봉 · 박종근 · 최연희 · 정두언 · 정갑윤 · 유기준 · 황우여 · 이재창 · 안경률 · 김학송 · 박희태 · 안홍준 · 최구식 · 김영덕 의원 발의)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4 오제세 · 우제창 · 이미경 · 문석호 · 송영길 · 강길부 · 이종걸 · 양승조 · 서혜석 · 이강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4 송영길 · 우제창 · 문석호 · 박영선 · 오제세 · 이계안 · 장복심 · 전병현 · 선병렬 · 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臟器等移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7. 2. 14 장향숙 · 한광원 · 유기홍 · 서재관 · 오제세 · 김태년 · 윤호중 · 백원우 · 우원식 · 김선미 · 장복심 · 노웅래 의원 발의)

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007. 2. 15 이규택 · 신상진 · 이계경 · 안상수 · 황우여 · 심재철 · 정진섭 · 차명진 · 남경필 · 정병국 · 우제창 · 고조홍 · 한선교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2. 15 이명규 · 김애실 · 박순자 · 신상진 · 안상수 · 윤건영 · 이경재 · 이성권 · 이인기 · 이해봉 · 정문헌 · 한선교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2. 15 이명규 · 김애실 · 박순자 · 신상진 · 안상수 · 윤건영 · 이경재 · 이성권 · 이인기 · 이해봉 · 정문헌 · 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6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7. 2. 15 양형일·최규식·강창일·염동연·원혜영·김동철·강기정·서갑원·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

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7. 2. 15 엄호성·김영숙·임해규·김애실·정희수·김양수·김영선·박재완·유기준·이재웅·김정권·허천·김영덕 의원 발의)

2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6 이주호·신상진·박상돈·이해봉·유승민·이인기·황우여·이성권·엄호성·안상수·박재완·윤건영 의원 발의)

2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6 이주호·신상진·박상돈·유승민·황우여·이성권·엄호성·안상수·박재완·윤건영 의원 발의)

2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7. 2. 20 고경화·신상진·김태년·안명옥·안상수·이해봉·정성호·정문헌·이인기·장복심·박찬숙 의원 발의)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7. 2. 20 황진하·김정훈·신상진·유재건·김용갑·김학송·주성영·이인기·김송자·정희수·이계경·정병국·엄호성·이해봉·안정률·이경재·김광원·안상수 의원 발의)

2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2007. 2. 20 정종복·신상진·안상수·이인기·정문헌·서상기·김태환·김기현·채일병·김성곤·이계진 의원 발의)

2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민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2. 21 선병렬·김원기·전병헌·박찬숙·이재오·박기춘·임종인·김태홍·지병

문·최재성·김재윤·최철국·박병석·배기선·신명·이인영·이계진·노웅래·이영순·강기갑·오영식·조정식·유승희·서혜석·박찬석·신학용·문병호·유인태·임종석·송영길·이낙연·최연희·조배숙·김덕규·장향숙·유재건·김근태·민병두·김송자·양승조·이종걸·정성호·박세환·이상민·김선미·강창일·권선택·최재천·장영달 의원 발의)

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미국 하원의 '위안부' 관련 결의안(H. RES. 121) 지지 결의안

(2007. 2. 21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1 김기현·이명규·곽성문·김성조·이주영·이재웅·유기준·주호영·박세환·김명주·김재경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1 김기현·이명규·곽성문·김성조·이주영·이재웅·유기준·주호영·박세환·김명주·김재경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1 김기현·이명규·곽성문·김성조·이주영·이재웅·유기준·주호영·박세환·김명주·김재경 의원 발의)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1 김기현·이명규·곽성문·김성조·이주영·이재웅·유기준·주호영·박세환·김명주·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21 정부 제출)

2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B2B)상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7. 2. 22 이승희·이인기·박희태·김덕룡·이상득·이재오·김용갑·최철국·제종길·김영주·김혁규·신학용·김재홍·김영춘·홍미영·김형주·심상정·노희찬·단병호·엄호성·주호영·원희룡·배일도·고진화·천정배·김재경·임종인·박영선 의원 발의)

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7. 2. 22 이상열 · 유선호 · 양형일 · 채일병 · 최인기 · 심재철 · 이승희 · 김효석 · 손봉숙 · 이낙연 · 신중식 의원 발의)

2월 23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2. 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7. 2. 22 권경석 · 김기춘 · 정갑윤 · 김낙순 · 김정권 · 양형일 · 김부겸 · 강창일 · 유기준 · 정두언 · 김학송 · 황진하 의원 발의)

2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7. 2. 23 이낙연 · 노현송 · 박재완 · 서재관 · 안상수 · 엄호성 · 유재건 · 이명규 · 이해봉 · 정갑윤 · 홍창선 의원 발의)

2월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2007. 2. 23 문희 · 고경화 · 홍미영 · 김영숙 · 안명옥 · 박찬숙 · 김애실 · 송영선 · 정형근 · 윤원호 · 이계경 · 김송자 · 장복심 · 유승희 · 박순자 · 강혜숙 · 박찬석 · 이혜훈 · 조배숙 · 박영선 · 김희정 · 신명 · 진수희 · 이경숙 · 이영순 · 심상정 · 최순영 · 현애자 · 김영선 · 장향숙 의원 발의)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7. 2. 23 이상배 · 김광원 · 신상진 · 김명주 · 이인기 · 이해봉 · 류근찬 · 김춘진 · 이규택 · 임인배 의원 발의)

2월 2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07. 2. 23 전병헌 · 정청래 · 이광재 · 노웅래 · 김희선 · 윤원호 · 지병문 · 조배숙 · 강창일 · 오영식 · 한광원 · 장복심 · 우제항 · 우제창 · 노현송 · 민병두 · 문희상 · 김재윤 · 장경수 · 우상호 · 박상돈 · 김재홍 · 서갑원 · 염동연 · 김한길 · 강봉균 · 강혜숙 · 김춘진 · 서재관 · 선병렬 의원 발의)

2월 26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이낙연 · 노현송 · 서재관 · 안상수 · 엄호성 · 이명규 · 이상열 · 정진석 · 최인기 · 홍창선 의원 발의)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國民投票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이상열 · 김효석 · 김송자 · 최인기 · 채일병 · 이승희 · 이낙연 · 신중식 · 손봉숙 · 권선택 의원 발의)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고조흥 · 김송자 · 신상진 · 이성구 · 임태희 · 엄호성 · 김성곤 · 심재철 · 이규택 · 문희 의원 발의)

3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장경수 · 박상돈 · 우제창 · 조경태 · 주승용 · 유필우 · 서재관 · 정성호 · 노영민 · 김원웅 · 류근찬 · 윤호중 · 양승조 · 전병헌 · 변재일 의원 발의)

2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천영세 · 단병호 · 심상정 · 노회찬 · 이영순 · 현애자 · 강기갑 · 최순영 · 권영길 · 김희선 의원 발의)

2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천영세 · 단병호 · 심상정 · 노회찬 · 이영순 · 현애자 · 강기갑 · 최순영 · 권영길 · 김희선 의원 발의)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27 정부 제출)

2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강창일 · 임종석 · 김태홍 · 강기정 · 박상돈 · 지병문 · 임종인 · 박찬숙 · 홍미영 · 김태년 · 김재윤 · 김우남 · 김낙순 · 이인영 · 정성호 · 이은영 · 박기춘 · 이목희 · 양형일 · 노현송 의원 발의)

屋外廣告物等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안명옥 · 한선교 · 유기준 · 배일도 · 오제세 · 고경화 · 김광원 · 정화원 · 유재건 · 정종복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안명옥 · 신상진 · 심재철 · 이해봉 · 나경원 · 이계경 · 김무성 · 배일도 · 김태년 · 공성진 · 유기준 · 이인기 의원 발의)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홍미영 · 장향숙 · 정진석 · 김태년 · 고조홍 · 유승희 · 윤원호 · 김영주 · 서갑원 · 조배숙 · 강기정 · 박영선 의원 발의)

3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박영선 · 정청래 · 천정배 · 김태홍 · 이목희 · 김종인 · 이계안 · 이미경 · 최재성 · 김현미 · 우윤근 · 장복심 · 최재천 · 김영주 의원 발의)

3월 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航路標識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7. 2. 28 정부 제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3. 2 정부 제출)

이상 3건 3월 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송영선 · 최병국 · 고경화 · 이성구 · 조성태 · 김송자 · 공성진 · 고조홍 · 황진하 · 정형근 · 박순자 의원 발의)

3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차명진 · 안상수 · 박상돈 · 엄호성 · 윤건영 · 박찬숙 · 이계경 · 이인기 · 신학용 · 이경재 · 진수희 · 박재완 의원 발의)

3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007. 2. 28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제출)

200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007. 2. 28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출)

이상 2건 3월 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강혜숙 · 이계진 · 김재윤 · 이시중 · 조성래 · 임종석 · 이광철 · 이미경 · 김형주 · 장향숙 · 정청래 · 조배숙 · 최구식 · 전병현 · 이경숙 · 유승희 · 이상호 · 노용래 · 박찬석 · 김태년 · 신기남 · 이광재 · 홍미영 · 서갑원 · 박찬숙 의원 발의)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

(2007. 2. 28 이인영 의원 외 107인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김동철 · 배기선 · 김우남 · 박상돈 · 우제창 · 강기정 · 김태홍 · 양형일 · 이종걸 · 이인영 · 염동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문희 · 서재관 · 이계경 · 신상진 · 심재철 · 박상돈 · 김태년 · 공성진 · 박재완 · 엄호성 의원 발의)

3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오영식 · 김희선 · 정청래 · 김부겸 · 서혜석 · 원혜영 · 민병두 · 강창일 · 김영춘 · 한병도 · 이명규 · 서갑원 의원 발의)

3월 5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장복심 · 오제세 · 고경화 · 박찬석 · 채일병 · 박상돈 · 한광원 · 조정식 · 우원식 · 우윤근 · 박영선 · 남경필 · 변재일 · 김태년 · 강성종 · 김명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장복심 · 오제세 · 고경화 · 박찬석 · 채일병 · 박상돈 · 한광원 · 조정식 · 정장선 · 우원식 · 우윤근 · 박영선 · 남경필 · 변재일 · 김태년 · 강성종 · 김명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김충환 · 주성영 · 황우여 · 신상진 · 박찬숙 · 김영덕 · 이해봉 · 정문헌 · 심재철 · 박재완 의원 발의)

3월 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 배일도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3. 2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障 碍 人 福 祉 法 全 部 改 正 法 律 案(대안)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檢 疫 法 全 部 改 正 法 律 案(대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農 漁 村 等 保 健 醫 療 를 위 한 特 別 措 置 法 一 部 改 正 法 律 案(대안)

(이상 6건 2007. 3. 2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韓 國 國 際 協 力 團 法 一 部 改 正 法 律 案(대안)

(2007. 3. 2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都 市 開 發 法 一 部 改 正 法 律 案(대안)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07. 3. 2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이자제한법안(대안)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法 律 救 助 法 一 部 改 正 法 律 案(대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07. 3. 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7. 3. 5 김원웅 · 노현송 · 김동철 · 정성호 · 정의용 · 송영길 · 김태홍 · 장복심 · 강기정 · 강창일 의원 발의)

정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2007. 3. 5 문희 · 정형근 · 정갑윤 · 김송자 · 최규성 · 임인배 · 박재완 · 서상기 · 정종복 · 고조흥 의원 발의)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07. 3. 5 한병도 · 강창일 · 임종석 · 이해봉 · 정성호 · 안상수 · 김태년 · 서갑원 · 최규성 · 노현송 · 정의화 · 고조흥 · 이근식 · 강성중 · 이광재 의원 발의)

3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7. 3. 5 정화원 · 이강두 · 안상수 · 이성권 · 김명주 · 남경필 · 황우여 · 정종복 · 신상진 · 권철현 · 안명옥 · 김무성 · 엄호성 · 박상돈 · 심재철 · 박순자 · 이재용 · 이재오 · 김희정 · 최구식 · 안홍준 · 임해규 · 김양수 · 박승환 · 배일도 · 정희수 · 이윤성 · 이인기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

(2006. 6. 30 정의용 · 강길부 · 강창일 · 김명자 · 김성곤 · 김영춘 · 김원웅 · 김재홍 · 김태홍 · 김혁규 · 노현송 · 노희찬 · 박기춘 · 박상돈 · 박영선 · 박희태 · 배기선 · 서갑원 · 신학용 · 심재덕 · 안상수 · 오제세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이경숙 · 이근식 · 이상경 · 이용희 · 이종걸 · 이해훈 · 임종석 · 임종인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정몽준 · 정문헌 · 정장선 · 정진석 · 제종길 · 조성태 · 홍창선 · 황진하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1. 8 노웅래 · 정청래 · 김재윤 · 김명자 · 강길부 · 김재홍 · 이광철 · 전병헌 · 강혜숙 · 한광원 · 박찬석 · 이상호 · 장경수 · 최철국 · 김희선 · 강성중 · 박기춘 · 김교홍 · 박찬숙 · 윤원호 · 지병문 · 오제세 · 김혁규 · 정동채 · 정성호 · 최성 · 최용규 · 이광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1. 8 이주영 · 박세환 · 나경원 · 최병국 · 임종인 · 선병렬 · 김동철 · 이상경 · 주성영 · 조순형 · 이종걸 · 이상민 · 안상수 · 안홍준 의원 발의)

한국법학원 육성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최재천·주성영·주호영·김재경·
천정배·양승조·우윤근·장윤석·정성호·
선병렬·최용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9. 6 오제세·김태년·이해봉·정성호·
김동철·유승희·우제창·박명광·서재관·
홍창선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7 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
교·정진섭·안홍준·정종복·최구식·안상
수·최병국·김용갑·박승환·이군현·서상
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임인
배·주호영·박찬숙·이계진·김기춘·주성
영·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6 정부 제출)

法律救助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
의)
(2006. 2. 20 양승조·김재경·엄호성·강창
일·신학용·안상수·박상돈·심재덕·이시
중·정성호·김태년·선병렬·우제창·문석
호·박기춘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6. 1. 18 김성조·심재철·김재경·엄호성·
유승민·김재원·임해규·김기현·이인기·
고조홍·안상수·신국환·김태년·황우여·
강기정·신상진 의원 발의)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6. 2. 1 선병렬·강창일·양승조·민병
두·엄호성·이은영·우윤근·김태년·김현
미·이영호·장영달·서재관·김정권·홍재
형·최성·장복심·박상돈·이근식·강기
정·박찬숙·주승용·정성호·이해봉·이상
열·최용규·장경수 의원 발의)

이자제한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9. 25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4 이종걸·이용희·임종인·선병
렬·주성영·최병국·문병호·이상경·이화
영·이상민·노영민·오영식·김낙순·김재
윤·김선미·우원식·최규성·우윤근·이영

호·김동철·양승조·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06. 12. 27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歸屬法人의株主總會召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5 김석준·이성권·정갑윤·최병
국·김재윤·곽성문·이해봉·이인기·신상
진·안상수·문희 의원 발의)

土地課稅基準調查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
표발의)

(2006. 9. 28 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
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
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滯納租稅의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
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8 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
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
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臨時土地收得稅納付義務免除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8 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
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
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
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8 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
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
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新聞用紙에對한關稅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
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8 김석준·곽성문·이인기·신상
진·정의화·안상수·문희·이성권·김희
정·황우여·박상돈 의원 발의)

韓國米穀倉庫株式會社와韓國運輸株式會社의合

**併에附隨되는諸稅免除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
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8 김석준 · 광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歲入補填國債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8 김석준 · 광성문 · 이인기 · 신상진 · 정의화 · 안상수 · 문희 · 이성권 · 김희정 · 황우여 · 박상돈 의원 발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문병호 · 장향숙 · 정화원 · 박재완 · 김태홍 · 한광원 · 안영근 · 서갑원 · 심재덕 · 우제창 · 이경숙 · 김재홍 · 이종걸 · 노현송 · 강창일 · 이상민 · 김동철 · 신상진 · 김영춘 · 정청래 · 안병엽 의원 발의)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명규 · 권경석 · 김명주 · 김성조 · 김재원 · 김정훈 · 박재완 · 엄호성 · 이낙연 · 이인기 · 이재웅 · 전여옥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6. 9. 7 임인배 · 주성영 · 엄호성 · 김태환 · 광성문 · 이인기 · 고조홍 · 김성조 · 공성진 · 김광원 의원 발의)

**物價安定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
원 대표발의)**

(2006. 9. 13 우제창 · 박상돈 · 윤호중 · 김재윤 · 김낙순 · 김현미 · 안병엽 · 김춘진 · 제종길 · 서갑원 · 심재덕 · 문병호 · 서병수 · 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2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
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06. 12. 4 정부 제출)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
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6. 12. 19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
정 비준동의안**

(2006. 12. 29 정부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
발의)**

(2005. 6. 1 정의용 · 강길부 · 고조홍 · 고흥길 · 김명자 · 김문수 · 김부겸 · 김성곤 · 김재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효석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춘 · 박명광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혜석 · 신기남 · 신중식 · 안명옥 · 안영근 · 염동연 · 원희룡 · 유선호 · 유인태 · 이근식 · 이상경 · 이성권 · 이시중 · 이혜훈 · 임종석 · 장경수 · 전병헌 · 전여옥 · 정문현 · 정성호 · 정의화 · 조경태 · 조일현 · 주승용 · 최경환 · 최재성 · 홍창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8. 22 이성권 · 김석준 · 이계경 · 김희정 · 김기현 · 김명주 · 김양수 · 권철현 · 남경필 · 박형준 · 광성문 · 박재완 · 정병국 의원 발의)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정병국 · 고조홍 · 김기현 · 김재경 · 김재원 · 김재홍 · 김충환 · 나경원 · 박상돈 · 박재완 · 박형준 · 신상진 · 안상수 · 엄호성 · 유기준 · 이시중 · 이윤성 · 이해봉 · 황우여 의원 발의)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

(2006. 6. 30 정의용 · 강길부 · 강창일 · 김명자 · 김성곤 · 김영춘 · 김원웅 · 김재홍 · 김태홍 · 김혁규 · 노현송 · 노회찬 · 박기춘 · 박상

돈 · 박영선 · 박희태 · 배기선 · 서갑원 · 신학용 · 심재덕 · 안상수 · 오제세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이경숙 · 이근식 · 이상경 · 이용희 · 이종걸 · 이해훈 · 임종석 · 임종인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정몽준 · 정문헌 · 정장선 · 정진석 · 제종길 · 조성태 · 홍창선 · 황진하 의원 발의)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5. 12. 7 김원웅 · 김태홍 · 장창일 · 신중식 · 이근식 · 장복심 · 이상민 · 정장선 · 이원영 · 김태년 · 노현송 · 원혜영 · 이종걸 · 이영순 · 김재홍 · 유선호 · 임종인 · 정성호 · 양형일 · 강혜숙 · 엄호성 · 정봉주 · 김성곤 · 선병렬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박형준 · 이성권 · 김양수 · 김재윤 · 엄호성 · 정병국 · 홍문표 · 김재원 · 이명규 · 이병석 · 나경원 · 남경필 · 박재완 · 홍준표 · 심재철 · 안상수 · 김희정 · 박세환 · 허천 · 이인기 · 박찬숙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7. 24 안명옥 · 정문헌 · 박상돈 · 이성권 · 황우여 · 신중식 · 이계경 · 이인기 · 김석준 · 배일도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8. 28 문병호 · 조일현 · 김종률 · 윤호중 · 김태홍 · 박재완 · 정청래 · 한광원 · 장향숙 · 우원식 · 최재성 · 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5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강길부 · 최병국 · 정갑윤 · 윤두

환 · 김기현 · 정몽준 · 권철현 · 유기홍 · 김영춘 · 이경숙 · 민병두 · 김영숙 · 김교홍 · 최재성 · 이은영 · 정봉주 · 정문헌 · 이균현 · 안민석 · 이시중 · 박기춘 · 홍창선 · 박상돈 · 김양수 · 한광원 · 조경태 · 문석호 · 신학용 · 유인태 · 이상호 · 박명광 · 오제세 · 변재일 · 노영민 · 유필우 · 김혁규 · 홍재형 · 이미경 · 김근태 · 양승조 · 정종복 의원 발의)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06. 6.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교육위원장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해석 의원 대표발의)

(2006. 4. 4 서해석 · 이광철 · 임종인 · 제종길 · 최규성 · 한병도 · 이종걸 · 신중식 · 문석호 · 염동연 · 이성권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6. 5. 1 신학용 · 박기춘 · 심재덕 · 조성래 · 정성호 · 노현송 · 안영근 · 이근식 · 박상돈 · 이인기 · 신중식 · 안상수 · 황우여 · 정의용 · 서재관 · 엄호성 · 안병엽 · 김재경 · 강기정 · 김태홍 · 김명자 · 장경수 · 박재완 · 이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6. 7. 14 양승조 · 박기춘 · 신학용 · 김성곤 · 박상돈 · 이근식 · 박재완 · 이영호 · 이종걸 · 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경륜·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5. 5. 3 안민석 · 강기정 · 강성중 · 김덕규 · 김원웅 · 김재윤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용래 · 민병두 · 배기선 · 신기남 · 오영식 · 이상호 · 우윤근 · 윤원호 · 이광철 · 이미경 · 이시중 · 이인기 · 정청래 의원 발의)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鄕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 2006. 12. 6 정부 제출)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0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 2006. 12. 6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
 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 2006. 12. 6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
 의)
 (2006. 8. 2 이석현·김진표·김선미·김춘진·
 구본회·우제창·문학진·김낙순·장향숙·
 최재성·김덕규·백원우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3 박찬숙·정진섭·엄호성·안상
 수·박형준·김재원·정성호·이계경·황우
 여·심재덕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16 노회찬·이병석·김학원·신국
 환·손봉숙·고조홍·박찬숙·장영달·장향
 숙·정화원·이윤성·김낙성·이호웅·박
 진·이계경·양승조·나경원·최순영·우제
 향·배일도·안민석·김재경·안택수·김태
 년·이진구·홍문표·이인제·안영근·엄호
 성·심상정·천영세·단병호·이영순·현애
 자·권영길·조승수·강기갑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정화원·신상진·박계동·김무
 성·이계경·김정권·홍준표·이성구·박종
 근·김희정·안명옥·차명진·이강두·서상
 기·정갑윤·정희수·박찬숙·황진하·남경
 필·이명규·김충환·이성권·권철현·배일
 도·임태희·안홍준·박형준·이상배·전재
 희·정중복·고경화·황우여·유정복·이주
 영·서병수·고조홍·정병국·이군현 의원 발
 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장
 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장향숙·제종길·강기정·정성
 호·김선미·정장선·정봉주·이근식·이미
 경·박명광·우윤근·이은영·이계안·이경
 숙·김종률·이목희·조성래·김덕규·유선
 호·문병호·양승조·우제향·백원우·박상
 돈·장영달·김영춘·조경태·원혜영·배기
 선·서갑원·장복심·김현미·김우남·이기
 우·강길부·김명자·우제창·장경수·이석
 현·김춘진·노영민·우원식·노웅래·한광
 원·김태년·김태홍·박기춘·이광철·서재
 관·지병문·윤호중·윤원호·조성태·강봉
 균 의원 발의)
 障礙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
 (2005. 9. 27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

세 · 최순영 의원 발의)

障碍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 발의)

(2005. 12. 28 정화원 · 이한구 · 진수희 · 박찬숙 · 황진하 · 고조흥 · 공성진 · 이상득 · 나경원 · 문희 · 엄호성 · 이계진 · 유승민 · 박세환 · 권철현 · 이인기 · 안명옥 · 김희정 · 이병석 · 안상수 · 박계동 · 정병국 · 권영세 · 신상진 의원 발의)

障碍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 김기현 · 김정권 · 유기준 · 이인기 · 이해봉 · 엄호성 · 김성곤 · 김명주 · 박상돈 · 황우여 · 김양수 · 박찬숙 · 김성조 · 안상수 · 고진화 · 이계경 · 정성호 · 박세환 의원 발의)

障碍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

(2006. 5. 17 장향숙 · 김태년 · 김춘진 · 유승희 · 황우여 · 신중식 · 강기정 · 김덕규 · 김우남 · 김영주 · 구노희 · 정청래 · 오제세 · 박기춘 · 문학진 · 박상돈 · 노현송 · 심재덕 의원 발의)

障碍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檢疫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4. 6 이성구 · 서재관 · 심재엽 · 유기준 · 김재원 · 이해봉 · 김재경 · 이인기 · 황우여 · 정성호 · 박재완 의원 발의)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藥事法 전부개정법률안

(2005. 5. 6 정부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 12. 9 정형근 · 김학송 · 김정권 · 엄호성 · 박세환 · 김기현 · 안명옥 · 고조흥 · 서재관 · 안병엽 · 박상돈 · 이강두 · 안상수 · 고경화 의원 발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12 정부 제출)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2 장복심 · 김태홍 · 장경수 · 윤원호 · 조정태 · 한병도 · 노영민 · 노웅래 · 한광원 · 김형주 · 장영달 · 박상돈 · 임종석 · 이인영 · 김영주 · 주승용 의원 발의)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

(2006. 9. 1 조일현 · 김명주 · 김현미 · 노웅래 · 문병호 · 문석호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송영길 · 우제창 · 양형일 · 유선호 · 이화영 · 이경숙 · 이시종 · 김낙순 · 주승용 · 장경수 · 제종길 · 정덕구 · 정장선 · 최철국 · 최규식 · 최규성 · 최용규 · 천정배 · 한광원 의원 발의)

(이상 1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6. 12. 6 정부 제출)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06. 12. 8 정부 제출)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8. 28 박상돈 · 김동철 · 김태홍 · 서재관 · 신학용 · 양승조 · 유필우 · 이계안 · 이시종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정대 의원 발의)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8. 28 박상돈 · 김동철 · 김태홍 · 신학용 · 양승조 · 유필우 · 이계안 · 이시중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2006. 8. 30 서재관 · 박기춘 · 박상돈 · 최규식 · 주승용 · 김동철 · 정성호 · 이인기 · 장경수 · 심재덕 · 정장선 · 김종률 · 엄호성 · 안병엽 의원 발의)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1 주승용 · 김종률 · 박계동 · 엄호성 · 김태홍 · 김재경 · 조일현 · 심재철 · 이시중 · 박상돈 · 서재관 · 정성호 · 최경환 · 김성곤 · 김재홍 · 김영춘 · 박찬숙 · 심재덕 · 노영민 · 안택수 · 최인기 · 김동철 · 정장선 의원 발의)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6. 10. 4 김동철 · 박상돈 · 김종률 · 양형일 · 임종인 · 이종걸 · 신중식 · 우제창 · 강기정 · 김태홍 · 지병문 · 홍준표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6. 2. 6 임인배 · 김병호 · 김석준 · 김태환 · 김학송 · 박형준 · 이상배 · 이인기 · 임태희 · 정갑윤 의원 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5. 30 정부 제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안홍준 · 이성권 · 고흥길 · 이인기 · 서병수 · 김태환 · 김명주 · 김무성 · 박승환 · 한선교 · 박세환 · 심재엽 · 이성구 · 김정권 · 이주호 · 김재원 · 유기준 · 문희 · 정갑

윤 · 김양수 · 허천 · 최구식 · 정희수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6. 8. 17 이호웅 · 김동철 · 김종률 · 김태년 · 노현송 · 박상돈 · 서재관 · 서혜석 · 신중식 · 안병엽 · 안상수 · 우제창 · 우제항 · 이경재 · 이원영 · 이인기 · 강기정 · 정동채 · 정성호 · 허태열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6. 9. 7 문학진 · 김정훈 · 김형주 · 노영민 · 박명광 · 서재관 · 서혜석 · 오영식 · 우제창 · 이광철 · 이상경 · 이원영 · 이인영 · 장영달 · 조성래 · 채수찬 · 최규성 · 최인기 의원 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9. 25 최인기 · 신중식 · 김홍일 · 이낙연 · 김효석 · 김동철 · 한화갑 · 이상열 · 손봉숙 · 박상돈 · 안상수 · 김종인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 이광재 · 한병도 · 정장선 · 류근찬 · 조일현 · 최철국 · 백원우 · 서갑원 · 정청래 · 김재윤 · 김혁규 · 이낙연 · 이은영 · 지병문 · 이계진 · 최연희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0 권경석 · 김명주 · 김학송 · 김성조 · 이주영 · 김영덕 · 이명규 · 이강두 · 박희태 · 박계동 · 황진하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7 강길부 · 정봉주 · 이인기 · 박상돈 · 김희선 · 윤원호 · 박찬석 · 노웅래 · 장복심 · 유승희 · 김낙순 · 최철국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5. 30 정부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7 김석준 · 안택수 · 이인기 · 광성문 · 김태환 · 김성조 · 주성영 · 이명규 · 이계경 · 이성권 · 권영세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6. 9. 14 박재완 · 신상진 · 엄호성 · 배일도 · 심재철 · 이성구 · 공성진 · 이주호 · 김애실 · 윤건영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강길부 · 주승용 · 박상돈 · 장향숙 · 김희선 · 정성호 · 김명자 · 박찬석 · 장복심 ·

김낙순·조성래·최철국·노웅래·김혁규·
문학진 의원 발의)

(이상 1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006. 7. 20 정부 제출)

2월 7일 제출자 철회 요구, 2월 21일 철회됨

국회의원(이주영) 윤리심사안

(2006. 9. 8 정청래 의원 발의)

3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

(2007. 2. 12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장
화영 외 535인으로부터 박세환 의원의 소개
로 제출)

2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연예인 교복광고 금지와 교복상한가 제한제에
관한 청원**

(2007. 2. 14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1번지
덕수빌딩 502호 최미숙 외 16인으로부터 김
영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심요구에
관한 청원**

(2007. 2. 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64 금영빌딩 5층 최승철 외 13인으로부터
안영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보호·보장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청원**

(2007. 2. 14 서울 마포구 신수동 85-41 우원
빌딩 2층 신지호 외 13인으로부터 정갑윤 의
원의 소개로 제출)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7. 2. 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2리 15
번지 조지연 외 730인으로부터 안민석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7. 2. 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2리 15
번지 조지연 외 860인으로부터 최순영 의원
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2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해방이후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
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07. 2. 1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언론
회관 1807호 정동익으로부터 이광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대형마트 규제 및 중소기업상인 보호 입법에
관한 청원**

(2007. 2. 15 경기 광명시 광명3동 158-26 김
경배 외 5인으로부터 이원영·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
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

(2007. 2. 15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3 성
우빌딩 3층 홍근수 외 2인으로부터 권영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주요 사법개혁 관련 법률(로스쿨, 공판중심제도,
배심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에 관한 청원**

(2007. 2. 2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번지 대영빌딩 7층 권승복 외 5인으로부터
권경석·이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에 관한 청원

(2007. 2. 27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북인천우
체국 201-43 인태연 외 9만 8579인으로부터
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의견서 제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2007.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관한 질문서

(2007. 2. 13 조순형 의원 제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07. 2. 22 조순형 의원 제출)

단국대학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질문서

(2007. 2. 23 이주영 의원 제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건)**

(이상 2건 2007. 2. 28 주성영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용역보고서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주한 베트남인 실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7. 2. 12 정부 제출)

식품접객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대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2건)

(이상 3건 2007. 2. 16 정부 제출)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2. 23 정부 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